1988年度
國政監査

勞動委員會會議錄

大韓民國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勞動部

日 時 1988年10月22日(土)
場 所 勞動委員會

(16時55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令培 지금으로부터 勞動部에 대한 1988年度 國政監査를 계속해서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오늘 被監査機關의 機關長 및 執行幹部 등에 대한 證人宣誓는 지난 5日 監査때 이미 宣誓하였기 때문에 오늘 宣誓는 없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그 동안 地方 各 機關 監査에서 蒐集한 關聯資料를 토대로 해서 오늘 마무리 確認監査를 보다 더 알차고 內實있는 監査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監査場에는 勞動部의 確認監査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勞動委員會가 出席要請한 證人으로 現代建設의 정훈목社長과 韓國 TC電子의 주영만씨 仁川地方勞動廳의 權度容廳長 京畿道地方勞動委員會의 卞鎬奎委員長이 證言을 하기 위해서 參席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분들의 宣誓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중 仁川地方勞動廳長은 仁川地域 監査時에 宣誓하였으므로 다른 세 분들에게만 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宣誓에 앞서서 專門委員으로부터 宣誓의 趣旨 및 處罰規定 등에 대한 關係法 條文 朗讀을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卓英鎭

(證人에 대한 事前案內文 朗讀)

○委員長 金令培 宣誓方法은 세 분이 共히 宣誓를 하시되 便宜上 現代建設의 정훈목社長이 發言臺에 나오셔서 宣誓書를 朗讀해 주시고 다른 두 분은 그 옆에 起立하여 같이 宣誓한 후 宣誓書에 署名 捺印해서 委員長에게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宣誓)

證言順序는 먼저 卞鎬奎 京畿地方勞動委員長 두번째로 權度容 仁川地方勞動廳長 세번째로 주영만 韓國TC電子 네번째 정훈목 現代建設社長 이런 順으로 證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證言順序에 따라서 入場해서 證言해 주시도록 하고 證言順序가 아닌 證人은 小會議室에서 待期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卞鎬奎 京畿地方勞動委員長에게 여러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證人申請을 하신 委員이 먼저 質疑하시고 자유롭게 기타 委員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證人! 城南에 있는 現代社會研究所 勞動組合이 지난 9月1日字로 京畿道地方勞動委員會에 爭議發生申告를 했지요?

○證人 卞鎬奎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爭議發生申告를 할 때 爭議의 내용을 申告書에 무엇이라고 記載했던가요?

○證人 卞鎬奎 爭議의 要求條件은 組合員 두 名의 解雇를 撤回해 달라는 要求였습니다.

○李仁濟委員 정확하게 그 부분만 읽어 보세요.

○證人 卞鎬奎 關係書類를 지금 持參을 안 해 와서…

○李仁濟委員 證言할 要旨가 바로 이 문제라고 證人申請하면서 明示했을텐데 資料를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 記憶하고 있습니까?

○證人 卞鎬奎 要旨는 記憶하고 있습니다.

研究委員으로 있는 組合員 두 名의 解雇

를 撤回해 달라는 要求條件이었습니다.

○李仁濟委員 申告가 接受된 이후에 斡旋委員도 委囑이 됐었지요?

○證人 卞鎭奎 예. 그랬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斡旋하는 과정에 두 當事者끼리 두번에 걸쳐서 交涉이 進行되었지요?

그 사실은 모릅니까?

○證人 卞鎭奎 斡旋은 저희가 직접 擔當하지 않고 저희 委員會는 水原에 位置하고 있고 現代社會硏究所는 城南에 있어서 거리관계도 있고 事件을 신속히 處理하기 위해서 城南地方勞動事務所로 하여금 斡旋하도록 斡旋委員을 指名해서 그 쪽으로 하여금 遂行하도록 措置했습니다.

○李仁濟委員 9月1日부터 9月13日前까지 勞使兩側에서 協商을 두번식 진행을 시켰는데 9月13日字로 京畿道 地方勞動委員會에서 當事者한테 公文을 發送한 일이 있지요?

○證人 卞鎭奎 예. 13日字 公文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公文의 要旨는 이 爭議申告는 調整을 할 수 없는 事項이므로 調整은 못하고 民事訴訟을 해야 되며 이것은 個人의 解雇에 관한 事項으로서 爭議事件이 될 수 없으므로 이 爭議는 正當性이 없다 이런 要旨이지요?

○證人 卞鎭奎 예.

○李仁濟委員 質疑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客觀的인 것은 지적을 하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證人이 그와같은 書面을 보내게 된 根據된 條項은 勞動爭議調整法 施行令 6條2項이지요?

○證人 卞鎭奎 예.

○李仁濟委員 6條2項은 勞動委員會는 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勞動爭議申告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法 第3章 4章 5章에 規定한 調整의 對象이 아니라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이유와 다른 解釋方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證人 卞鎭奎 예.

○李仁濟委員 첫째로 爭議申告가 되어서 勞使兩側에서 그것이 서로 勞使間의 協商에 의해서 妥結되어야 할 事項이라고 인식해서 協商이 두번씩이나 진행된 時點에서 그러니까 申告가 있은지 13日이 경과한 時點에서 그런 書面을 보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즉 왜 뒤늦게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통상 그렇게 늦게 보냅니까?

○證人 卞鎭奎 그것은 斡旋을 저희가 직접 擔當치 않고 城南地方事務所에서 斡旋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斡旋結果를 기다려 보지도 않고 무엇때문에 이런 文件 보낼 필요가 있어요?

○證人 卞鎭奎 書面으로 通報받지 않았어도 城南所長과 저와 수시로 그 爭議事項에 대해 通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斡旋委員인 城南所長과 監督課長이 兩當事者를 調査해 보니까 爭議 目的事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組合員의 解雇撤回다 이런 것을 再次 確認했습니다. 그래서…

○李仁濟委員 城南所長과 監督課長이 언제쯤 通話內容에서 爭議事項이 단순한 勤勞者 個人에 대한 解雇다 하는 내용으로 언제쯤 그런 通話를 했어요?

○證人 卞鎭奎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9月… 아무튼 冷却期間이 경과되기 전입니다.

○李仁濟委員 9月10日前입니까?

○證人 卞鎭奎 예. 전에 그러한 通話를 한 적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이 그와같은 公文을 보낸 근거가 되는 施行令 6條2項에 보면 이것은 申告書만 가지고 審理해서 申告書 記載上 명백히 조정을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만 그와같은 處理를 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卞鎭奎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申告書를 받아가지고 열흘이나 넘게 가지고 있다가 알선위원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야 이것은 調停對象도 아니다 이런 公文을 보냅니까?

○證人 卞鎭奎 저희들이 爭議申告書를 받으면 서면검토를 합니다. 서면에 나타난 것하고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대화해 보면 요구조건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과정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해결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의 證言 내용에 따르면

書面을 보아서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냉각기간이 경과하기 임박한 9月10日 직전쯤에 알선을 맡았던 京畿道 城南事務所長하고 監督課長한테 이것을 개인에 대한 解雇철회의 문제다하는 내용만 받아서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9月13日字로 公文을 보냈다 말이지요.

○證人 卞鎭奎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施行令에는 이유와 다른 해결방법만 알려주도록 돼있지 勞動組合이 申告한 爭議內容이 정당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해 주도록 한 규정은 없는데 정당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해 주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證人 卞鎭奎 이 爭議事件은 團體協約을 체결하기 위해서 團體交涉을 하다가 결렬된 集團的인 事件만을 저희가 爭議事件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個人의 해고문제는 爭議事件으로 취급한 例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다른 方法으로 해결하도록 當事者한테 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통상적으로 各 地方勞動委員會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확인한 결과 요구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하는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行政指導의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정당성이 없다 하고 말한 것은 行政指導가 아니고 판단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한 權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거없이 文書를 發送한 것은 맞지요.

○證人 卞鎭奎 法的인 근거는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지금 現代社會硏究所의 두 사람에 대한 해고는 現代社會硏究所의 勞動組合側에 의하면 個人에 대한 단순한 해고의 문제가 아니고 勞動組合 活動을 방해하기 위한 不當勞動行爲로써 行해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해고된 두 사람은 勞動組合의 간부일 뿐만 아니고 勞動組合 傘下에 硏究自律守護委員會의 會長과 副會長의 職責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두 사람에 대한 解雇問題도 硏究員의 自律性을 보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制度上의 문제하고 직결되어서 發生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해고를 철회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勞動組合側이 주장하는 硏究의 自律性을 使用者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해고문제가 단순한 個人的인 차원에서의 해고가 아니고 勞動組合의 활동과 관련해서 일어난 문제이고 또 해고의 기준이 근로의 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일 때에는 그것이 現行法上 爭議事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卞鎭奎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도 組合員 전체나 근로자 대부분에 관계되는 集團的인 사항일 때는 爭議事項이 될 수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지요. 現代社會硏究所는 硏究職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多數에게 利害關係가 있는 근로조건이지 않습니까?

○證人 卞鎭奎 爭議 要求條件은 두 사람을 復職시키라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목표이고 그 이면에는 그 해고가 硏究員의 自律性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고문제가 個人의 차원이 아니고 勞動組合의 활동과 직결돼 있을 때는 爭議事項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證人 卞鎭奎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에 관한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勞使間에 협상을 하다가 결렬됐을 때는 그것은 爭議對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해고를 당한 두 사람을 복직시키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集團的인 爭議의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취급을 해왔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證人이 알고 있는 것은 勞動組合에서 낸 申告書 記載 내용하고 그 다음에 城南事務所 所長하고 監督課長 두 사람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 두가지 뿐인데 兩 當事者를 불러서 더 깊이 勞動組合과 使用者間의 紛爭내용이 무엇인지 더 審理해 보고서 판단을 해도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證人 卞鎭奎 저희들이 申告 접수했으면 斡旋委員한테 맡기고 저희 勞動委員會로 移管되면 그때 저희가 직접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事件은 저희한테 移管되기 전에 斡旋 단계에서 그런 것이 확인되고 公文을 發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當事者를 불러서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이렇게 爭議事項이 아니다고 해서 9月13日字의 公文과 같은 내용의 公文을 보낸 일이 여러번 있습니까? 今年에는 몇번이나 있어요?

○證人 卞鎭奎 기억이 잘 나지 않는대 몇번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公文에도 분명히 現代社會研究所 勞動組合에 보낸 公文처럼 여러분이 주장하는 爭議는 正當性이 없다. 이런 價値判斷을 결들여서 보냈나요.

○證人 卞鎭奎 다른 公文에 그러한 文句는 쓰지 않았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여기서 굳이 쓴 이유는 뭐예요?

○證人 卞鎭奎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다른 公文에는 쓰지 않고 여기에만 쓴 것은 무슨 底意가 있는 것 아닙니까?

9月1日부터 9月13日 사이에 現代社會研究所 사람 만난 일은 없나요?

○證人 卞鎭奎 한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지금 證人이 그런 판단을 해서 公文을 보냈기 때문에 現代社會研究所側에서도 勞使間 對話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籠城이 두달 가까이 長期化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도 두 사람 해고는 분명히 個人的인 차원이 아니라 研究員들에게 自律性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證人 卞鎭奎 저희는 9月1日字로 爭議 發生申告를 접수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當事者로부터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請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冷却期間에 우리가 調査를 진행한 결과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가지…

○李仁濟委員 누구누구 調査했지요?

○證人 卞鎭奎 研究所側과 勞動組合側 申請人 두 사람에 대해서 全般的으로 진술을 들었습니다.

○李仁濟委員 방금전에 本委員이 9月1日부터 9月13日 사이에 研究所 사람만난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지요?

○證人 卞鎭奎 調査는 委員長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審査官이 있습니다. 審査官이 직접하기 때문에 저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審査官으로부터 그 書類를 檢討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證人 卞鎭奎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冷却期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그 뒤에 研究所側에서 勞動組合 사람들을 勞動爭議調整法 違反 嫌疑로 不法爭議를 한다는 이유로 告發을 했지요? 城南事務所에서 이 勞動爭議가 不法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質疑한 일이 있지요?

○證人 卞鎭奎 예. 받은 일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爭議行爲 이것에 대한 不法性 與否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回信을 보냈지요?

○證人 卞鎭奎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證人!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證人이 9月13日字로 보낸 公文 내용대로 하면 勞動組合側이 주장하는 사항은 애당초 爭議事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適法性 與否는 우리가 판단 못한다는 이런 結論은 무엇입니까?

○證人 卞鎭奎 9月13日字 公文 내용은 適法性 與否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그 爭議行爲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견해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다 했으면 결국 그 내용은 爭議事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9月13日 公文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不法的인 爭議行爲이다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卞鎭奎 저희 勞動委員會에서 그런 해석할 權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 우리 監査班이 城南地方事務所에 監査하러 갔을 때 現代社會研究所 勞組員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그 주된 표적이 當 地方勞動委員會였습니다. 권위가 칼날처럼 서야 될 그런 機關에서 이

렇게 法에 근거도 없는 판단을 해서 一方的으로 使用者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려가지고 잘 진행되던 협상마저 중단시켜 버리고 紛糾를 惡化시켰다 말이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證人 卞鎭奎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른 委員 本 證人에게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李海瓚委員 지난 번 行政指導는 法的 근거없이 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勞使紛糾의 악성에 대해서는 地勞委員長께서 책임을 져야지요?

○證人 卞鎭奎 그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어디까지나…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던 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公務員은 法에 의해서 工務를 집행하죠. 그런데 法의 규정이 없이 집행한 사실이 저런 결과가 빚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證人 卞鎭奎 저희가 판단이나 조정같은 것은 물론 法에 의해서 하지만…

○李海瓚委員 다른 얘기는 필요없고 그날 行政指導가 분명히 法에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證人 卞鎭奎 法的인 근거는 없지만 行政指導는 근거없이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證人 卞鎭奎 저희들은 事件을 원만히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證人이 소속되어 있는 機關이 一般 勞動部傘下機關 같으면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準司法的인 합의체 機關입니다. 지도를 하는 機關이 아니고 판정을 내리는 機關입니다. 어때요 판정 이상의 무슨 지도를 할 수 있는 權限이 있나요?

○證人 卞鎭奎 물론 판정과 조정이 主된 저희 業務이지만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서 爭議를 제기하거나 事件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法을 떠나서 근거없이도 行政指導로서 간혹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勞動部地方事務所 같으면 法的인 뚜렷한 근거가 없더라도 勞使間의 안정을 위해서 行政指導를 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證人이 속해 있는 機關은 완전히 準司法的인 機關으로서 판정만을 하는 機關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行政指導를 합니까?

○證人 卞鎭奎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면 앞으로 是正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是正을 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에게 이것이 法에 근거하지 아니한 잘못된 行政指導였다라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보낼 用意가 있어요 없어요?

○證人 卞鎭奎 그런 사과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왜 할 수 없습니까?

○證人 卞鎭奎 저희는 당초에 어디까지나 事件을 원만히 잘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公文을 발송했으니까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바로 그 公文을 보낼 때 당자간에 서로 상당히 긴장되게 다투고 있을 때죠? 本委員이 現代社會硏究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얼마후에 그 公文이 발송되었는데 本委員이 방문했을 적에 한창 爭議中이었었어요. 그랬죠?

○證人 卞鎭奎 냉각기간이 끝나고 보냈습니다. 爭議中이었습니다.

○李海瓚委員 결과적으로 그 公文을 보내가지고 爭議가 조정이 되어서 事件이 쉽게 끝났어요?

○證人 卞鎭奎 현재 爭議는 爭議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爭議로서 그것을 취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紛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로 인해서 그 公文이 온 뒤에 현대사회연구소에서 그 公文을 복사해서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不法的인 활동이니까 중지하라는 안내문을 써 붙이고 한 사실알죠?

○證人 卞鎭奎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최근에 와서 그런…

○李海瓚委員 최근에 언제 알았어요?

○證人 卞鎭奎 勞動組合側에서 그 事件으로 인해서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請을 9月22日字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받고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李海瓚委員 그것으로 인해서 사태가 악화되었어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證人 卞鎭奎 제가 보기에는 사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檢察에 勞組側과 硏究所간에 서로 맞고소했죠?

○證人 卞鎭奎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아니 地勞委員長으로서 그렇게 答辯할 수 있어요? 서로 勞使間에 勞動問題 차원을 지나서 이제는 法廷問題로까지 번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李仁濟委員 대화가 단절된 것만으로도 악화도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판단을 해 가지고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빛을 보여야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答辯을 왜 그렇게 해요?

○李康熙委員 勞動委員會가 公文을 보내는 과정에는 일단 판정기구지마는 勞使關係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업무소관으로 해서 판정을 하는 기구죠. 그것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의 전초전이 된 것인데 그 결과가 그것으로써 수습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에 異見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證人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잘 참고해가지고 판정기구로서의 역할 또 평화적 勞使關係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판정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관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公文으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異見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보는 쪽의 판정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판정에 물론 도움이 되기 위한 또 勞動行政에서 國家일을 行政的으로 하는데 하나의 이론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했다는 것은 證人의 心中이죠.?

○證人 卞鎭奎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異見의 차이에서 악화되었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證人 卞鎭奎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토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이 문제는 이따가 長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證人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李相洙委員께서 신청한 證人으로 僞裝就業與否調査結果에 대한 내용을 묻기 위해서 권도용 仁川地方勞動廳長의 證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 委員이신 李相洙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공무중에 바쁘실텐데 다시 나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證人께서 지난 번 우리가 地方監査 때 10月5日字로 세창물산의 廢業이 僞裝廢業이 아니라는 결론의 公文을 세창물산 勞動組合에 보낸 바가 있고 당일 監査時 우리 監査委員들의 質問에 대해서 세창물산의 廢業은 僞裝廢業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本委員이 세창물산이 왜 僞裝廢業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까 지금까지의 결론을 철회하고 다시금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그 조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權度容 19日 저희 廳監査 당시에 지적하신 세창물산 僞裝廢業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간단히 報告드리겠습니다.

監査 당시에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廢業후 영업행위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인 信託銀行 南山支店의 수출실적기장과 회사매출장을 확인했습니다 해 보니까 9月12日 또 10月7日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선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李相洙委員 선적의 물량을 알 수 있습니까?

○證人 權度容 선적물량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문회사인 「슈미드브라드」 韓國支社가 임의로 仁川 北區에 있는 가전요업사에 하청을 주어서 세창물산 명의로 선적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관계를 또 조사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5月26日하고 7月5日 2회에 걸쳐서 이것 역시 仁川 北區에 있는 범아요업에 하청을 주어서 선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紛糾가 발생한 6月28日 또 계속해서 9月3日 廢業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전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슈미드」社등 3個 외국주문회사에서는 계속되는 勞使紛糾로 인해서 납품기일이 지연되니까 제품불량 등을 우려해서 製品製造 金型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판매실적이 있는데 왜 全量輸出이냐 이렇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창물산 河洞 산청광업소에서 채광한 高嶺土 약 10% 정도를 국내 행남자기 등에 납품 판매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 貸借對照表에 국내판매량이 있는 이유는 완제품이 아니고 하동광산에서 가져온 고령토를 다른 데에 팔아서 나온 金額이 쓰였다는 취지인가요?

○證人 權度容 全量 외국에 수출한다니까 국내에 판매한 실적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조원가 중에 노무비율은 평균 55%이고 그리고 총 매출액중에서 노무비율은 4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勤勞者의 勞動運動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廢業했다든가 廢業했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 그러나 法人을 個人企業으로 전환하는 등 변칙적 방법으로 不當勞動行爲를 한 물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회사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勤勞者들의 집단실직방지를 위해서 勞使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에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별지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證人의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세창물산의 廢業은 僞裝廢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십니다.

○證人 權度容 저희들 일선 노동행정관서로서는 勤勞者들의 勞動運動을 방해하기 위해서 廢業했다는 물증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廢業으로 인해서 勤勞者者들이 집단실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업주에게 勤勞者들의 임금을…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別論으로 하고 우선 판단을 묻는데요. 證人께서는 다시금 조사를 한 결과 처음의 결론이 옳다는 것인가요?

○證人 權度容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證人을 오늘 굳이 부른 이유는 直近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勞動部長官을 모시고 직접 證人에게 다시금 사실관계를 물음으로써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을 묻고 證人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기초하고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면은 직근 상급기관에서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證人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묻기 전에 일반적으로 僞裝廢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證人이 보기에 勞使紛糾가 발생해서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 있는데 별다른 기업의 변동없이 갑작스럽게 廢業申告를 했을 때 그것은 僞裝廢業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난 번 監査 때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權度容 전번 監査때 제가 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갑자기 廢業申告가 발생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제

가 報告드린 바와 같이…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이 회사의 구체적인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勞使紛糾가 진행되고 있는데 별다른 경영조건의 변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廢業을 했다면은 그 廢業은 勞使紛糾와 관련한 僞裝廢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입장에 동조하시냐고요?

○仁川地方勞動廳長 權度容 이 회사는 廢業의 事由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누적된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묻습니다. 아무래도 僞裝廢業이 자주 발발하면은 僞裝廢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判斷의 방법으로서 현재 치열하게 勞使紛糾가 일어나가지고 진행중인데 會社는 勞使紛糾 이전과 별다른 財政上 變化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廢業했다. 그렇다면 勞使紛糾와 관련된 僞裝廢業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證人 權度容 이 會社와 관련없이 一般的인 기준은 委員님과 같이 判斷할 수 있을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그와같은 一般論에는 同意한다는 것이지요?

○證人 權度容 예.

○李相洙委員 우선 證人께서 10月 5日字로 勞動組合長한테 보낸 回示에 이 會社는 僞裝廢業이 아니다 하는 이유로서 첫째 經營上의 赤字累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會社는 豫算公告를 계속 新聞에 發表하는 株式會社인데 昨年에도 黑字였지요?

○證人 權度容 企業 會計監査報告의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貸借對照表라든가 損益計算書를 보니까 赤字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會社의 資産 負債 經營狀態를 정밀히 調査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會社가 56年度에 設立되었습니다. 그래서 1·2年만 調査할 것이 아니고 설립이후의 것을 번부 調査해서 委員에게 일목요연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新聞에 公告된 決算公告를 묻는 것입니다.

83年度 84年度 85年度 86年度 87年度 다 利益으로 新聞에 決算公告된 사실은 認定하지요?

○證人 權度容 新聞公告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新聞公告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87年度지요? 86年度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證人 權度容 86年度도 赤字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委員님에게 調査해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會計結果를 나타낸 監査報告書인데 이 報告書에 赤字로 되어 있다는 취지인가요?

○證人 權度容 예. 뒤에 보면 1億 몇 百萬원이 赤字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報告書 作成이 언제인지 아세요?

○證人 權度容 作成날짜는 잘 모르겠고 昨年度의 自體報告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新聞에 公告까지 내놓고 갑작스럽게 이같은 報告書가 나왔다면 이 報告書가 作成이 언제 되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僞裝廢業 與否와 관련해서 會社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證人 權度容 公認會計士의 自體 監査報告書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監査報告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지요?

○證人 權度容 지금 委員님이 지적하신 1億 몇 百萬원의 黑字가 생겼는데 그뒤에 보면 修正 損益計算書에 1億7,000餘萬원이 赤字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年度別 收支狀況을 파악하고 또 會社의 資産 負債 經營狀態를 자세히 보고 해서 綜合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2에게 주신 期日이 19日날 監査받고 20日 21日 兩日間이기 때문에 전부 파악하기에 時日이 촉박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減價償却費를 잘못 計算해가지고

約 7億정도 損失을 처리된 부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會社의 固定資産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證人 權度容 지금 調査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機械裝置부분의 固定資産이 1億원 밖에 안됩니다. 土地가 가장 중요한 資産인데 처음에 5,000원 하던 것이 10年만에 5,000萬원으로 100倍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번 資産 再評價를 했어요. 減價償却이 있다면 機械 부분에 있을텐데 1億원 밖에 안되는 資産인데 어떻게 減價償却費가 7億원이 나옵니까?

이것은 勞動者들 주장처럼 다른 會社와 비교할 때 豫算方法에 基本的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會社가 決算을 新聞에 公告할 때면 新聞公告에도 減價償却費가 나와 있는데 무려 7億원을 잘못 計算해 가지고 新聞해 잘못 發表할 수가 있겠습니까?

○證人 權度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調査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新聞上에 公告된 決算公告를 보면 昨年에도 이 會社는 분명히 黑字를 記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昨年에 賃金引上을 9.12% 했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까?

○證人 權度容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87年4月1日字로 9.12%의 賃金引上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昨年에 黑字를 記錄했기 때문에 賃金引上을 해주면서 運營을 했던 것입니다.

今年에 賃金引上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證人 權度容 1次로 8.6% 또 29% 合해서 37.6% 引上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今年初에 8.6%를 引上해 주면서 계속 操業을 했다면 과연 그 당시에 會社가 不況이었겠습니까?

○證人 權度容 이 會社의 經營狀況은 綜合的인 調査報告를 받아가지고 報告드릴 資料를 내놓기 전에는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빠른 時日內에 調査해서 별도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經營上 赤字累積이란 判斷은 방금 本委員이 몇가지 質問으로 事實關係가 들어났지만 정당한 判斷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證人께서 廢業 이유가 정당하다고 하며 製品注文의 斷絶 및 減少를 들었는데 방금 證人께서 調査했다는 「스미드」社가 人形값을 20% 引上해 줄테니 계속 供給해 달라고 심지어 勞組에까지 와가지고 紛糾를 그만하고 빨리 人形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사실을 確認했습니까?

○證人 權度容 그 事項은 확인 못했습니다.

○李相洙委員 어쨌든 아까 證人께서 「스미드」會社가 注文한 物量이 다른 下請企業體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세창의 이름으로 輸出된 것을 確認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下請을 준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證人 權度容 세창에서 下請을 준 것이 아니고 「스미드」 韓國支社가 임의로 가전요업에 주어가지고 세창 名義로 輸出한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왜 세창物産 名義로 했어요?

○證人 權度容 이 會社가 輸出與件을 갖추지 못한 것같습니다.

○李海瓚委員 名義만 빌려주었다는 말인가요?

○證人 權度容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세창에서 왜 名義를 가전요업에 빌려주었습니까?

○證人 權度容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스미드」가 가전요업에게 직접 L/C를 냈습니까?

○證人 權度容 L/C 開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창 名義로…

○李海瓚委員 確認도 안해보고 직접 주었다는 證言을 합니까?

「스미드」가 가전요업에 注文을 하려면 「로칼」이든 아니든 L/C를 發行해야지… L/C開設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去來가 成立합니까?

○證人 權度容 公式이든 非公式이든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세창이 注文을 받아 자기 工場에서 製造할 수 있는 만큼은 製造하고 製造하지 못할 만큼은 다른 會社에 로칼 L/C를 또 發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가

지고 세창 이름으로 船積을 하는 것이 下請입니다. 그런데 이 세창의 경우 그렇게 해 오다가 세창 本社工場에서 製品이 안만들어지니까 가전요업에 物件을 만들어 달라고 注文한 것 아닙니까?

○證人 權度容 세창에서 要求한 것이 아니고 「스미드」 韓國支社가 가전요업에…

○李相洙委員 어디에서 下請을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物件을 만들면 外國에 팔 수 있을 정도로 外國에서 注文量이 殺到하고 있음을 反證하지 않습니까?

物件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서 팔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製品 注文 斷絶 이것은 틀린 얘기네요.

○證人 權度容 그러니까 勞使紛糾로 인해서 船積期日이 잘지켜지지 않는다든가 혹은 製品에 不良이 생길까 싶어 勞使紛糾가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의 人形을 거두어가고 注文斷絶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5月26日 7月2日까지 별도로 下請을 주었다고 얘기했지요?

○證人 權度容 예.

○李相洙委員 5月26日경에는 勞使紛糾도 없었고 아직 勞組가 成立되기 전인데 그때도 세창에서는 그 당시로 보아서 會社에서 生産量을 다 만들지 못해서 下請까지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證人 權度容 예

○李康熙委員 勞動廳이 企業이 黑字다 赤字다 下請을 주었다 하는 것을 媒體로 制度的으로 그 廢業이 안된다 못하게 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있습니까?

○證人 權度容 없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지금 委員會에서는 勤勞者問題가 나니까 이런 事態를 豫防해서 企業이 원활하게 되어야 할텐데 안되는데 罷業은 勞動部가 하지만 黑字가 나고 下請을 주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法的 根據는 없지요?

○證人 權度容 없습니다.

○李康熙委員 判定할 수 있는 權限이 있어야 終結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李相洙委員 支援的 의미의 質問은 步調質問을 해 주시고 反對的인 입장의 質問을 하시려면 제 質問이 끝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들을 다른데로 가져간 사실은 확인 됐습니까?

○證人 權度容 예. 확인됐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원형들을 딴데로 빼돌렸다는 얘기는 딴데에서라도 物件을 만들어야겠다는 추리를 할 수 없었습니까?

○證人 權度容 注文會社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원형들을 딴데 가져가서 그것으로 物件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證人 權度容 그것을 어느 會社에 주어가지고 만드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다음에 세창의 本社 영업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던가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던가요?

○證人 權度容 세창물산이라는 것은 河東과 山淸에 鑛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河東 山淸 鑛山과 仁川製品工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法人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鑛山業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鑛山業은 계속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本社의 營業部는 주로 인형을 만들어서 外國에 輸出하는 것을 主業務로 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會社가 廢業했으면 本社營業部도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활발하게 움직일까요?

○證人 權度容 鑛山은 約 90%는 輸出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國內市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이 지금 證言하는 것을 보면 會社에서 자기들 유리한 이야기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듣고 와가지고 그것이 결론인 양 여기서 證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지난번 우리가 仁川 勞動廳 監査할 때 그렇게 해서 報告해 달라고 했나요 분명히 本委員이 알기는 이것이 僞裝廢業일 것같으면 그것은 일종의 집단해고이고 犯罪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만일 그런 嫌疑가 있는지 내사를 해서 결론을 내보라고 요청했던 것 아니예요.

○證人 權度容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이 會

社側에서 자기들 유리한 것 이야기한 것 들고온 이외에 뭐 있습니까?

○李潤子委員 우선 證人! 이것 조사해 봤어요? 지금 非組合員들은 다른 기숙사에 기숙을 시키고 下請業體에서 일을 하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 조사해 봤습니까?

○證人 權度容 212名은 退職金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就業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調査 안해 봤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점만 봐도 문제가 있는데 證人은 組合員들은 지금 籠城하고 있다고 한다면 非組合員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組合員들의 얘기를 빌리면 非組合員들은 廢業한 날짜에 다른데 기숙을 시켜서 下請業體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業所는 작년부터 계속 長時間 勞動을 시켜왔습니다. 몇時間정도 시켰다고 확인됐습니까?

○證人 權度容 작년에는 11時間정도 시켰다 합니다만 今年에는 9時間 조금 넘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本委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時間씩 長時間 勞動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製品注文의 단절때문에 廢業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證人 權度容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좋아요. 그러면 2番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지요?

3番 生產量 減少 및 資金壓迫 이런 판단을 내렸지요? 그러면 生產量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분석해 보았습니까?

○證人 權度容 역시 勞使紛糾로 해서 生產量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李相洙委員 분규가 일어나기 前까지는 生產量이 떨어지지 않았었지요? 그러면 분규다 해결되면 生產量에 문제가 없겠네요.

○證人 權度容 一時的으로 그럴는지 몰라도 長期的으로 보면 紛糾가 끝나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勞使紛糾와 관련짓지 않고 다른 이유로써 生產量 減少가 일어날 요인이 없다면 그것이 廢業의 정당한 이유는 안 되겠지요?

○證人 權度容 지금 현재 廢業한 이유로써는 紛糾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紛糾가 되니까 會社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李相洙委員 勞動組合이 設立된 것이 6月 아닙니까? 불과 3個月 동안에 生產量이 약간 감소했다 하다라도 그것은 勞使紛糾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根本的인 廢業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證人 權度容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企業主 판단이 아마 계속해서 生產性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勞使間에 協調 분위기만 조성되면 生產性이 되돌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勞使紛糾만 원만히 처리되면 다른 요인에 의한 生產量 減少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勞使紛糾를 원만히 해결하고 계속 조업하는 데에 다른 장애요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證人 權度容 예.

○李相洙委員 좋아요. 특히 3個月 동안에 生產量이 감소한 이유가 아예 인형의 그림을 그리는 붓도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는 母會社인 河東鑛山으로부터 고령토도 공급하지 않고 이런 원료를 공급하지 않아서 生產量이 감소됐다는 것을 조사한 바 없습니까?

○證人 權度容 계속 가동을 할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다음에 자금압박이 있었다고 廢業理由에 써 있는데 賞與金과 退職金을 얼마 지급한 것으로 集計됐습니까?

○證人 權度容 額數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212名分에 대해서 退職金은 다 支給하고 97名分이 지금 수령거부로 支給안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證人! 지난번에 資金壓迫이 있어서 廢業했다는 이유를 붙이기에 廢業하면서 賞與金과 退職金까지 支給하면서 과연 자금압박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賞與金과 退職金의 金額이 얼마인가해서 調査해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엇을 조사하고 나오셨습니까?

○證人 權度容 賞與金은 오늘 午後에 支給하도록 이렇게 會社에 조치를 해놓고 왔고

자금압박이라는 것은 문제는 紛糾가 계속되니까 去來銀行에 자금대출을 안해준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지난번 證言하실 때 이 會社의 實質的인 주인이 아버지되는 김종오씨라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김종오씨가 우리나라 私債市場의 代父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證人 權度容 그것은 會長을 한번 만나려 하니까 어디까지나 法人의 代表는 社長이기 때문에 會長이 면담거절을 했습니다. 私債에 대한 대부라든가 이런 것은 이 會社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李相洙委員 지난번에 證人께서 이 會社의 실질적인 社長은 김종오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證人 權度容 얘기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이 會社의 廢業理由가 자금압박이라면 이 사람의 財産狀態도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證人 權度容 그 당시에 이 會社는 法人體이기 때문에 代表理事가 책임을 질 일이라서 代表理事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海瓚委員 代表理事가 現 社長이지요 이 사람이 언제 代表理事로 취임했고 전에 뭐하던 사람이었습니까?

○證人 權度容 금년 4月에 代表理事에 취임했습니다. 前歷은 제가 알기로는 美國에서 공부하다 돌아와서 이 會社의 경영권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아버지가 만든 會社를 자기자본 안들이고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資金管理하는 것은 아버지이지요? 따라서 아버지가 資金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 會社에 運營資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아버지가 國內 私債業界에서 손 꼽히는 사람이고 한데 자금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證人 權度容 9月3日입니다.

○李海瓚委員 선적한 날짜는 언제이지요?

○證人 權度容 9月12日입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세창내에 다른 데에서는 이 도자기를 만든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12日 선적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창물산에서 生産하던 것과 같은 제품이지요?

○證人 權度容 그렇지요.

○李海瓚委員 결국 이 工場이 없어도 다른 곳에도 生産하고 있다는 것은 反證하는 것이지요.

○證人 權度容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날짜는 어디서 파악했습니까?

○證人 權度容 이것은 去來銀行이 信託銀行 南山支店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輸出實績 記帳 會社의 賣出帳 이런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李相洙委員 좋아요 證人의 얘기대로 하더라도 결론을 내려봅시다.

어떻습니까? 자금압박이 있었다고 證人이 판단을 내렸는데 우선 지난번 證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會社의 실질적인 주인의 김종오씨라는 것은 인정하지요?

○證人 權度容 예.

○李相洙委員 그리고 김종오씨가 私債市場의 代父로서 막대한 現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證人 權度容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會社의 負債比率이 104%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證人 權度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報告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證人께서는 성실하게 판단하려고 했다면 그날 이후에 정말 이 會社의 負債比率이 104%인가를 확인해 봤어야 되지요?

○證人 權度容 委員님께서 時間을 이틀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촉박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지금도 이 會社가 資金壓迫에 있다고 答辯하십니까? 자금압박이 있었다는 판단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집니까?

○證人 權度容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會社에 資金壓迫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

게 여겨서 「언더라인」까지 쳐 놓은 高賃金으로 인한 競爭不可라는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겠어요.

한번 賃金部分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7年度 요업계의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앞에 계신 上級機關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인데 요업계의 평균 임금이 24萬7,567원이 맞습니까? 그런데 세창의 평균임금은 16萬3,466원이어서 무려 7萬원 정도가 적습니다.

여기에 녹음테이프가 있는대 仁川地勞廳의 나승신 감독관의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1,250원 인상하게 된 것이 근로감독관의 중재에 의해서 會社와 근로자들이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1,250원을 올리기로 한 것은 근로감독관의 중재안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주장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주장을 하십니까?

○證人 權度容 그렇습니다. 근로감독관을 앞에 놓고 근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1,250원의 중재안을 제시한 사람은 근로감독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지금 證人께서는 어떤 근거로 자신있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證人 權度容 감독관하고 근로자들이 대화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1,250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감독관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지요?

○證人 權度容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7月22日 협상해서 결정된 것이지요? 그런대 9月3日 갑자기 사용자가 나는 협상의 내용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폐업한 것 아닙니까?

7月22日 협상에 나가서 수락한 내용인데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權度容 어제 社長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협상을 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된 것은 누적된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로자들을 집단으로 실직상태로 만든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양보를 얻고 해서 會社를 재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엊그저께 감사가 끝난뒤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이런 성격의 기미가 있으면 사법처리하겠다 委員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증을 찾지 못했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會社가 자기 사업하기 싫다고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재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本人이 證人한테 요청한 것은 판단을 해서 위장폐업임이 분명해지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묻겠는데 지난번 證言時에 하청을 준 것만 발견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지요?

○證人 權度容 예.

○李相洙委員 그러면 다른 것은 제하고 9月12日 하청을 주어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수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스미스」會社에 조회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스미스」會社에서 확인해 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證人 權度容 서류는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證人의 판단보다도 勞動部의 有效的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長官께서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상에 혹자 누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나요?

○證人 權度容 한해 두해 경영상태를 파악해서는 잘 모르겠고 설립 때부터 소급해서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委員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물적증거로서 신문에 발표된 결산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임금을 올려주었고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금도 경영상의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인가요?

○證人 權度容 당장 委員님 質問에 答辯드릴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會議時間 아끼고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세창물산의 폐업이 위장이냐 아니냐와 **權度容** 仁川地方廳長의 직무수행이 올바르냐 잘못됐느냐 두가지 문제가 논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國會에 대한 政治的인 책임은 國務委員인 長官이 집니다. 이런 정도로 證人에 대한 質問을 마치고 이것에 대한 政府側의 입장을 長官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答辯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책 같습니다.

○李相洙委員 證人의 판단은 더이상 요구하지 않고 長官께 묻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새로운 각도에서 묻겠는데 지금 證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세창물산 전 사업이 폐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퇴직을 하라는 종용에 불응하고 농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계약은 세창물산하고 한 것이지 공장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權度容 폐업공고를 하고 이미 해고수당 퇴직금을 청산하는 입장에서는 고용관계는 끝나는 것이고 근무장소가 仁川工場이라고 할 때 仁川工場이 폐업을 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유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梁慶子委員 우선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추락사한 사람이 위자료를 받았습니까?

○證人 權度容 5,000萬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족에게 물어보니까 다 받았다고 합니다.

○梁慶子委員 어머니는 받았다고 하고 아버지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의 이유가 자금압박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會社가 주문도 많고 이익도 발생하는데 會社를 운영하지 않고 廢業을 선택했다면 企業人의 社會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농성만으로도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同僚委員이 세창물산의 폐업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기한 質問과 廳長의 答辯을 들으면서 위장폐업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사실로 입증해서 法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地方勞動廳長은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원만한 타결만 되면 위장폐업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근로자를 돕고 기업주도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李相洙委員 長官께서 本委員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憙 지금 채택된 證人이 산하의 廳長이기 때문에 答辯過程에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말씀을 먼저 전제하면서 長官의 所信을 밝히겠습니다.

各委員님들께서 質疑한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證人인 廳長이 商去來行爲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專門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答辯 도중에 質疑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담긴 答辯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證人을 거느리고 있는 長官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李相洙委員께서 여러가지 質問이 계셨습니다.

法人體의 長의 家親이 市中의 私金融系統의 巨物이다 또 企業主가 34歲의 나이로 그 企業을 引受해서 法人體 長으로서 運營하고 있다 등 몇가지 要件을 볼때 長官으로서 다시한번 勤勞者를 보호하는 側面에서 만일 그같은 사실이 들어나면 法에 의해서 엄히 立件을 시킬 방침을 구축해 주고 추후 該當廳長에게 또 그 地域 事務所長에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具體的으로 세밀하게 專門人力이 없으면 貿易에 관한 또 稅務에 관한 조예가 깊은 專門委員을 動員해서 세창物産에 대한 문제는 여러 委員님들에게 心慮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措置하겠다는 것을 長官으로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答辯내용을 보면 제가 묻는 判斷에 대해서 정확한 答辯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 證人에게 質問하는 과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綜合해서 長官께서 볼때 이 廢業이 經營上 이유로 인한 廢業이 아니다 하는 判斷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答辯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대개 추측은 갑니다마는 具體的인 確證은 일응 調査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措置하겠다는 뜻입니다.

○李相洙委員 일응 經營上 이유로 廢業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이른바 僞裝廢業처럼 보인다 이런 취지로 解釋할 수 있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순수히 經營上 문제로 廢業 申告한 것은 아니다 대개 그렇게 판단은 갑니다 다만 具體的으로 다시한번 實狀을 면밀하게 調査해서 만일 그런 것이 들어나면 法에 의해서 處理하겠다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일응 그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調査해서 일응 내린 판단이 사실이란 것이 들어나면 이 事業主에 대해서 어떤 措置를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不當勞動行爲 등등 勞動關係法을 적용시켜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까지 起訴 의견으로 送致하면서도 拘束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事業主는 단돈 100萬원 50萬원 罰金 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一罰百戒 次元에서 拘束起訴할 생각은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사실이라면 엄히 다스리는 방향으로 檢察에 품신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檢察과 法院 當局에서 決定할 문제인데 저희는…

○李相洙委員 檢察의 結論을 묻는게 아니고 勞動廳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올릴 것인지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企業도 勤勞者도 살 수 있으면서 一罰百戒主義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모색된다면 그 길을 擇하겠다는 것이 저의 所信입니다.

○李相洙委員 拘束起訴 意見으로 送致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사실이라면 그런 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래서 調査한 연후에 그 結果에 의거해서 措置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일응 僞裝廢業이라고 보인다고 判斷을 내렸으니까 더 이상 判斷을 要求하지는 않겠습니다.

證人으로 나와계시는 廳長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廳長은 지난 10月15日字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勞動組合長에게 僞裝廢業이 아니라는 回示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 監査때에도 자신있게 僞裝廢業이 아니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철저한 調査를 거치지 않고 선불리 使用者 입장에서 結論을 내린 調査로써 勞動問題를 擔當하는 行政官廳의 公務員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今年 1月에 長官의 엄한 指示에도 불구하고 上級機關長의 指示를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廳長에게 응분의 엄중한 處罰을 내려주도록 당부합니다.

거기에 대해 答辯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사실 與否를 調査해서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만 參考로 廳長으로 赴任한지 일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未熟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故意로 알면서도 委員님들께 그런 報告가 있었다면 廳長 뿐만아니라 저도 廳長을 거느리는 長官으로서 責任을 통감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台燮委員 僞裝廢業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證人 權度容 一般的으로 事業을 一時的으로 中斷했다가 一定한 時期가 지나 場所를 옮겨서 다시 事業을 계속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勞動運動을 방해하기 위해서 法人體를 解散하고 個人企業으로 환원하든가 이런 類型을 僞裝廢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判斷하는 것은 企業主가 不當勞動行爲 次元에서 한 것인가를 調査하고 있습니다.

不當勞動行爲次元에서 僞裝廢業했으면 勤勞者에게 被害가 가니까 不當勞動行爲 處罰規定을 적용해서 立件하고 있습니다.

○李台燮委員 企業主가 얼마후 工場을 다시 세웠다든지 하는 것이 證明이 되어야 僞裝廢業이라고 判斷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不當勞動行爲에 抵觸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證人 權度容 지금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李台燮委員 그러니까 廳長이 僞裝廢業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안되면 그러면 僞裝廢業이라는 判斷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時間이 지나서 僞裝廢業이 아니라는 것이 證明될 때까지 1年이고 2年이고 계속 追跡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이 僞裝廢業이 아니냐는 거예요?

○李相洙委員 지금 廳長께서 僞裝廢業의 槪念을 아주 좁게 解釋하니까 혼란에 빠지는데 勞使紛糾가 일어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會社 문을 닫고 다른데 가서 다시 操業을 한다든지 꼭 이런 경우만을 僞裝閉業이라고 하지 않고 勞使紛糾가 일어나자 經營上 이유로 廢業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가만히 있어도 僞裝廢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廳長께서는 어느 特定部分만을 한정해서 僞裝廢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李台燮委員 勞動部長官이 僞裝廢業이다 아니다 判斷할 수 있는 法的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判斷합니까?

○李仁濟委員 僞裝廢業이 法律用語는 아니고 一般用語로서 勞動組合의 活動을 彈壓하기 위한 수단으로 經營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廢業을 僞裝해서 勞動組合의 活動을 彈壓하고 또 勞動者를 解雇하는 것은 勤勞基準法 내지 勞動組合法上의 犯罪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犯罪 搜査權은 勞動部傘下 勞動監督官이 特別司法警察權을 갖고 있으니까 搜査하기 위해서 1次로 起訴 의견이라든지 不起訴 의견이라든지 判斷하는 것은 勤勞監督權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梁慶子委員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企業主가 道義的인 責任을 지고 補償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時間의 餘裕를 주지 않고 外部勢力과 合勢해서 會長을 며칠간 軟禁을 했다는데 勤勞者 彈壓이 아니라 企業主가 監禁되어 彈壓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兩者가 평등하게 條件을 가지고 勞使協議가 되는 것입니까?

○證人 權度容 企業主가 軟禁을 당했다든가 혹은 暴行을 당한 것은 一般刑事法에 의해서 處罰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勤勞者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 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證人에 대해서 質問을 하실 때에는 證人申請한 目的事項에 대해서만 質問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地方廳長을 두고 어떤 法律的인 有權解釋을 要하는 質問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證人! 退場하시지요.

○證人 權度容 충분한 答辯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梁慶子委員께서 申請하신 주영만 韓國TC電子 職員 證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委員들에게 豫備知識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韓國TC電子의 勞使紛糾에 대한 眞相을 좀 알기 위해서 證人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梁慶子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慶子委員 本委員이 證人을 부르게 된 動機는 馬山地域 韓國TC電子 또 한국 SOWA 등 많은 會社가 勞使間에 원만한 合意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勤勞者와 事業主가 共히 심한 갈등과 被害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勞와 使가 共히 그들 스스로 第3者의 介入없이 하루빨리 産業平和를 이룩해서 勤勞者는 일하면서 그 代價를 철저히 補償받고 또 企業主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代價를 충분히 保障시켜주면서 勤勞者들에 대한 處遇 및 組合活動을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진정이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本 韓國TC電子의 勞使紛糾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韓國TC의 勞組 設立 후 勞組側이 맨 처음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주영만 지난 6월 勞組가 결성되고나서 처음 요구한 사항은 常勤者 10人을 요구했습니다.

○梁慶子委員 組合員은 몇名입니까?

○證人 주영만 종업원 1,800名에 組合員은 23名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慶子委員 前任者 10名이 임의로 作業場

을 무단이탈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무단이탈 했습니까?

○證人 주영만 本人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會社에서 團體交涉에 의해가지고 正式 常勤者를 임명하기 前날까지 勞組 執行部 5·6名 女社員이 매일같이 조업을 하지 않고 4·50日 정도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탈사유는 자기들 勞組活動을 위해서 會社의 허락없이 이탈한 것입니다.

○梁慶子委員 그러면 會社에서는 이들 근로자 주장대로 任命할 計劃을 갖고 있었습니까?

○證人 주영만 會社에서도 勞組 活動을 하는데 常勤者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하고 團體交涉에서 결정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梁慶子委員 그런데 굳이 10名을 요구한 그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주영만 本人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7名 또 4名으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梁慶子委員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證人 주영만 會社와 협의없이 무단으로 職場을 이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會社의 規定에 의해서 7月3日인가 징계해 가지고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梁慶子委員 勞組에 女子와 男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證人 주영만 23名 全員이 女社員입니다. 저희 會社는 男子社員이 400名정도로 대부분 管理職이고 女社員이 1,400名 정도입니다.

○梁慶子委員 男子들은 勞組 加入을 희망합니까?

○證人 주영만 지난 6月 한달동안 계속해서 男子社員들의 勞組 加入을 원했습니다.

○梁慶子委員 김정임 勞組委員長은 男子社員의 加入을 반대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주영만 네 男子社員을 加入시키면 御用이 될 것이다 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慶子委員 男子 社員중에서 「화이트 칼라」즉 관리직은 얼마나 됩니까?

○證人 주영만 관리직은 50名에서 100名 가까이 됩니다.

○梁慶子委員 TC의 勞組設立이 會社設立에 비해서 늦은 것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會社에서 設立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주영만 그런 사실은 없었고 저희 會社가 馬山 輸出自由地域에서 美國 단독시장에 年間 1億弗 輸出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從業員들의 대우기준이 他企業의 賃金보다 上位에 속했기 때문에 지난 6月 이전에는 아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梁慶子委員 대우도 괜찮은데 勞組側은 아침 일 시작하기 前의 조회나 저녁 종례시간도 賃金은 支給하라고 했다는데 會社에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證人 주영만 會社에서는 公式的인 「룰」에 의해서 조회나 종례는 없고 다만 各 生産工場에서 各 班別로 班長이나 組長들이 아침에 作業準備를 한다든지 마치고 나면 傳達事項이 있기 때문에 16年 自生的으로 그런 간단한 모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一律的으로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것이 싫다면 하지 않겠다해서 勞組하고 妥協이 돼가지고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梁慶子委員 7月17日 옥상숙씨가 허루종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은 누가 했다고 봅니까?

○證人 주영만 처음에는 姓名 未詳의 男子 4·5名에 납치돼서 버스로 데려간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 코리아 타코마 勞組 幹部로 있던 허상식 外 4·5名이 납치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慶子委員 그와같은 報告한 자료에 의하면 馬山 昌原 勞動組合總聯合體라는 단체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될 만한 여러가지 資料가 있는데 昌原勞動組合總聯合會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히 說明해 주세요.

○證人 주영만 우선 馬山 昌原의 勞動組合聯合會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昌原과 馬山輸出自由地域 15個정도 業體가 昌原勞聯에 加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議事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證言하시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梁慶子委員 同僚委員 議事에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같습니다. 지금 昌原勞聯所屬 勞組員 500名이 지난해 6月8日 TC電子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당시 그들의 요구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주영만 그때는 주로 勞組彈壓하지말라 그 다음에 賃金引上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梁慶子委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馬山昌原勞動組合聯合會라는 단체가 韓國TC外의 단체에도 함께 가서 가끔 동조 시위라든지 여러가지 勞組活動을 한다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주영만 昌原이라고 직접 이름을 달고 온 것을 목격한 것은 없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會社 勞組員들이 저희 會社앞에서도 시위를 한 적이 있고 他會社에서도 合同으로 시위를 한 사실은 목격했습니다.

○梁慶子委員 한국TC전자는 勞組設立 이전에 殘業이나 夜勤을 많이 시켰나요.

○證人 주영만 會社의 生產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殘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強制性은 없고 반드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梁慶子委員 殘業의 手當은 얼마나 줍니까?

○證人 주영만 基本給의 150%를 줍니다.

○梁慶子委員 여러가지를 통해서 證人이 어떤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지 勞使紛糾에 대한 會社의 입장이나 勤勞者들의 최근의 상태 要求事項 등을 알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證人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證人 주영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미연에 防止해서 슬기롭게 이끌지 못하고 社會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會社 및 關係者는 道義的 責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같은 문제가 再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4個月에 걸친 勞使紛糾를 지켜보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이 勞勞間의 문제라고 하지만 외부의 영향력이 없이 會社에 맡겨주시면 法的으로 잘못한 事項이 있으면 당연히 處罰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會社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會社에게 맡겨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自體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個人的으로 느끼는 것은 외부의 많은 분들이 直觀的으로… 그러라고 해서 當社에서는 勞使紛糾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梁慶子委員 證人을 통해서 會社側에 要求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社會的 倫理 企業人들의 倫理는 조금전에도 僞裝廢業을 해서 勤勞者들을 彈壓하고 일시에 職場을 잃게 하는 低賃金에 시달리는 勤勞者들을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여러가지 質問을 그런 측면에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企業人이 어렵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안되고 豫防이 중요하고 會社側에서도 勞使紛糾의 要因을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出入할 수 없는 소지를 주는 것이 會社로써 勞使問題를 스스로 자기들만의 勞使活動을 보장받는 묘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勤勞者들을 우대해 주고 企業活動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孫柱煥委員 男子社員이 身元不明의 몇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身元이 누구입니까?

○證人 주영만 한 사람은 身元이 밝혀져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코마」株式會社의 勞動組合 組織部次長입니다.

○孫柱煥委員 馬·昌勞聯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證人 주영만 馬·昌勞聯의 會長으로 계시는 분이 「코리아타코마」株式會社의 勞組委員長 이홍식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孫柱煥委員 毆打事件이 두번 있었지요? 關係者들이 司法處理가 되었습니까? 警察은 왜 해결을 못하고 있었지요?

○證人 주영만 허상식씨 組織部次長 한 사람만 처리가 되고…

○孫柱煥委員 貴社에서 勞組結成을 妨害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女性勤勞者 20名이 처음에 勞組를 結成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管理職에 있는 男子社員들이 勞組結成을 具體的으로 妨害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주영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會社에 法律顧問이 계십니까?

○證人 주영만 企業協會에서 包括的으로 法律顧問을 두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번 勞使紛糾가 생긴 다음에 가서 議論했던 사람이 어떤 분인가요?

○證人 주영만 이번 紛糾하고는 議論드린 적이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다른 분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諮問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주영만 事前에는 없었고 暴行事件이 있고 난 후에 刑事的인 문제로 해서 辯護士가 선임되고 해서 여쭈어 보고 한 것은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馬·昌勞聯이라는 團體가 法에 根據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法을 어기고 違法한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會社의 勤勞者들이 밖에 있는 勞動團體를 통해서 자신들의 勤勞條件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諮問 구하는 것은 會社가 마치 法律顧問한테 가서 諮問을 구하는 것처럼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證人 주영만 제가 보는 觀點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李相洙委員 내부에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밖에서는 간섭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만일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會社內 勤勞者들이 不法한 勞動爭議에 관여해 가지고 行動을 한다면 마땅이 處罰받아야 되겠지만 會社內에서 정당한 勞組活動을 하는데 그 활동을 주도하고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주영만 法的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李相洙委員 바꾸어 얘기하면 정당한 勞動組合 活動에 대해서는 組合이 밖에 있는 團體로 부터 조언이나 諮問을 구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證人 주영만 그것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李台燮委員 職責이 어떻게 되십니까?

○證人 주영만 總務部次長입니다.

○李台燮委員 지금 紛糾狀態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證人 주영만 지난 7月까지는 심했고 8月에도 部分的으로 怠業이 많이 있었고 지난 9月에는 正常操業이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李台燮委員 지금도 爭議行爲期間입니까?

○證人 주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李台燮委員 爭議申告가 들어왔습니까?

○證人 주영만 안 들어왔습니다.

○李台燮委員 안 들어왔는데 怠業을 하고 있습니까?

○證人 주영만 7月중에는 部分的인 怠業申告가 있었습니다.

○李台燮委員 勞動廳에서 勤勞監督官이 나왔습니까?

○證人 주영만 몇차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證人이 總務部次長으로서 어떤 責任있는 答辯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證言하는 것 밖에는 없지요?

○證人 주영만 그렇습니다.

○金炳龍委員 國政을 다루면서 그리고 監査인데 一個 次長을 데려다 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묻는 것은… 모든 문제를 사실 그대로 油印物로다가 委員들한테 돌려주면 더 참고하 될 것 같습니다.

○梁慶子委員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不法的으로 재삼자가 法에 보장되지 않는 위치에서 介入한 情況根據를 이 會社가 代表的으로 피해를 본 會社라고 해서 證據를 찾기 위해서 물은 것인데 제가 받은 資料와 證人에게서 들은 바를 정리해 본다면 勞組結成 움직임이나 要求가 전혀 없었던 會社에서 갑자기 전任者 10名을 要求하면서 作業場을 이탈한 사실과 두번째는 男子職員은 한 作業場에서 일하는 技能職까지도 철저히 배척 한 사실 임課長이라든지 구매과 職員이 暴行時 들은 바 내용 暴行者들과 馬·昌勞聯과의 연관성 馬·昌勞聯이 주도한 韓國TC電子會社 앞에서의 시위 및 要求內容 他會社 앞에서의 示威資料 등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勞使紛糾 다발地域마다 임의의 不法 勞動團體가 活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地域에서는 民衆의 黨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民衆의 黨 再建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民衆의 黨 再建委員會라는 명칭을 가지고 勤勞者들의 紛糾를 배후에서 조장하거나 고무 선동하거나 意識化를위한 夏期수련까지 갖는 등의 事例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덜가진 者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느 불순한 一方에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一方이 그야말로 그들에게 의지하고 교육시켜서 요구한 勞組活動을 適法, 不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 때문에 勞動部長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勞政行政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勞動部를 비롯한 政府가 勤勞者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不信 당하고 적대감까지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本委員은 이러한 의문을 끊임없이 갖고 地方監査에 임했으며 그 결과 중요한 핵심은 勞政 擔當者들의 애정의 결핍이고 使命感의 결핍이라는 結論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막중한 使命感에 맞지 않게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해서 紛糾責任을 勞動部長官에게 묻는 것인데 어떻게 일반 勤勞監督官에게 물을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좋은 충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勞動部는 勤勞者의 입장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최선봉에 서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梁委員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올림픽을 끝마친 이 마당에 우리 勞動部長官이하 全職員은 다시 태어나는 기분과 각오로 새로이 규정지어진 法에 의거해서 勞動行政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겠다는 현재 모두의 각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실지 勤勞를 감독하고 있는 저희 勤勞監督官問題도 많은 부분에 충고를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겸들여서 제가 與野 여러 委員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저희들이 그와 같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編制上으로 혹은 經濟的으로 여러 委員님들께서 立法過程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梁慶子委員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勤勞監督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일손의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담당한 業體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며 또 접수되는 陳情書나 처리하는 실정을 그들이 직접 확인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이고 그 業務量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것인지를 長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業務에 임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總務處나 企劃院에 예산투쟁도 강력히 하셔서 적절한 對策과 事務督促을 해 주십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의 이상과 같은 意見은 勤勞者만을 위해서 일처리하라는 취지나 또는 勤勞監督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發言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신있고 형평을 잃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勤勞者와 使用者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政府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勞政의 잘못으로 政府가 勤勞者들로부터 매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우기 政治人이 勤勞者들의 인질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台燮委員 이 문제를 證人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會社의 勞動組合이 創立된 지가 얼마 안되는 것같고 또 여러가지 合法的인 爭議라든가 여러가지가 아직 미숙한 인상이 듭니다. 그것을 合法的인 勞動組合活動 勞使協議 이런 것을 잘 啓導한다고 할까 法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合法的인 勞動爭議를 통하여 그 權利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法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勞動者들이 손해를 본다 말이예요. 그래서 勤勞監督官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勞動部로서는 거기에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대단히 감사합니다.

솔직이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사실입니다. 組合을 결성하고자 하는 勤勞者들은 使用主들보다는 勞動關係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組合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대응하는 使用者側은 전혀 勞動關係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이렇게 신생되는 組織에 대해서도 組織을 강화할 뿐더러 地方長官 政府投資機關 出捐機關長들로부터 시작해서 全體企業主들에게 勤勞者들에게 못지 않은 勞動關係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政府 혹은 勞總 또 經營者에 대해서는 經總에서 勞動關係法에 대한 교육을 강화 실시하도록 임계획하고 있고 실지 실시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報告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까지 네 證人 가운데 세 사람의 證人으로부터 證言을 청취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7時53分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時에 다시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53分 監査中止)

(21時10分 繼續監査)

○委員長 金令培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제 정훈목 現代建設社長의 證人을 相對로 勞動部의 現代建設에 대한 勤勞監督 精密調査에 관해서 委員들의 質問이 있겠습니다.

證言臺에 나오세요.

먼저 李海瓚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海瓚委員 證人께서는 오늘 會議에 參席하셨는데 會議가 늦게까지 지연되어 밤늦게 證言하시게 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國會의 業務性格을 이해하시고 證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證人께서는 현재 現代建設의 代表理事이신가요?

○證人 정훈목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專門經營人인가요? 흔히 말하는 事業主인가요?

○證人 정훈목 專門經營人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鄭會長하고 姻戚 關係가 되나요?

○證人 정훈목 그런 사실이 없고 저도 「샐러리맨」입니다.

○李海瓚委員 現代建設에는 지금 生産職 勞動者가 전체 몇 名이 일하고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정확한 數字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任職員 및 技能工이 國內外 現場에 約 4萬2,000名이 勤務하고 있습니다.

이중 海外勤務하는 任員 및 職員은 1,627名이고 勤勞者數는 約 6,100名으로서 23開國에 98個 現場이 있고 海外勤務總員이 約 7,727名이 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國內에서는 가장 큰 産業體아닌가요 더 큰 産業體가 있나요?

○證人 정훈목 數字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韓國電力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海瓚委員 韓電은 公企業的 性格이 강하고 私企業으로서는 가장 큰 會社라고 볼 수 있겠지요?

○證人 정훈목 더 많은 任職員 會社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李海瓚委員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現代建設만 해도 4萬2,000名정도의 大企業이기 때문에 現代建設에서 勞動關係法令이 지켜지고 있는가 안지켜지고 있는가가 우리 社會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에서 우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勞動部에서 精密監督을 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정훈목 예.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監督結果 勤勞基準法 違反이라든가 勞動關係法 違反事項들이 많이 지적되었지요

○證人 정훈목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精密監督結果 金品未淸算이 얼마로 지적되었습니까?

○證人 정훈목 國內現場에 관계되는 지적사항이 13個이고 海外部門으로 지적된 것이 7個 項目이 있습니다.

그 중 金額이 정확하게 算定된 項目이 있고 정확하게 算定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項目別로 資料를 해 보았지만

總計를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李海瓚委員 勞動部에서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20億에 가까운 金品 未淸算이 있는데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證人 정훈목 예.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이것에 대해 勞動部로부터 是正指示하라는 通知는 받으셨지요?

○證人 정훈목 예. 지난 10月11日에 接受했습니다.

지금까지 是正이 完了된 項目은 그중 몇가지가 있고 기타 項目은 是正을 하기 위해 檢討中입니다.

○李海瓚委員 일종의 滯拂인데 왜 滯拂하게 되었나요?

○證人 정훈목 各 項目別로 그 이유가 다릅니다.

第1項目은 年月次를 綜合해서 勞動部에서 是正指示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에는 當社가 約4,639名의 月次 有給休暇를 未實施했다고 통상 賃金을 推定해서 9億7,400餘萬원으로 나와있고 年次休暇도 같은 이유로 통상 賃金의 計가 7億5,700餘萬원으로서 年次手當에 대치 支給할 것을 是正指示를 받았습니다.

○李海瓚委員 現代建設에는 勞務를 擔當하는 管理職에 있는 專門的인 사람이 있지요?

○證人 정훈목 예. 있습니다.

常務가 한 분계시고 그 밑에 擔當하고 있는 部長級들도 있지요?

○證人 정훈목 現代建設에 契約되어 있는 顧問辯護士는 특별히 되어 있지 않고 「그룹」적인 次元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李海瓚委員 勞動關係法에 대한 認識이 없거나 法을 잘몰라서 안지키는 것은 아니지요?

勞動者들은 法을 몰라서 못지키는 경우도 더러 있고 따라서 자기들의 權益을 확보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會社는 그런 法에 대한 이해라든가 專門的인 知識을 諮問받을 수 있는 能力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證人 정훈목 法的인 문제가 發生했을 때는 諮問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李海瓚委員 이른바 통상賃金에 포함되는 對象에 대해서는 大法院 判決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요?

參考로 말씀드리면 現代建設의 特殊精密檢査의 結果를 보면 通常賃金 計算 착오로 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會社에서는 마치 通常賃金으로 計算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던가요?

○證人 정훈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海瓚委員 通常賃金으로 計算해서 支給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셨던 것이지요?

○證人 정훈목 제가 現代建設에 共同代表理事로 온 것이 지난 3月1日附로 勤務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政策에 대해서 오기 전에 어떠한 政策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李海瓚委員 3月1日 이후에는 이런 賃金이 滯拂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나요?

○證人 정훈목 精密檢査의 報告를 받고 난 후에 그 是正指示를 받고서 具體的으로 그 내막을 파악했습니다.

○李海瓚委員 社長께서 그러셨더라도 하나의 法人으로서 會社의 勞務管理業務는 일관된 방침하에서 執行되는 것이지요?

○證人 정훈목 예. 그렇게 봅니다.

○李海瓚委員 精密檢査結果를 보면 滯拂額도 많도 常習해서 年度에 걸쳐서 여러차례 滯拂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賃金을 滯拂하면 重刑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證人 정훈목 法을 違反하면 罰을 받는다는 사실은 常識的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法을 違反하면 罰을 받지만 특히 3個月 이상 賃金이 누적해서 滯拂되거나 혹은 30日 이상 1年이내에 5回 이상 반복해서 滯拂되면 勤勞監督官 職務規定에 보면 拘束基準에 해당됩니다.

勤勞基準法을 違反했을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그냥 處理되고 말지만 勞動部에 勤勞監督官의 職務規定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職務規定 司法警察業務를 規定하고 있는 7章55條2項에 拘束基準에 보면 滯拂賃金事件하고 2項에 가서 3個月以上 賃金이 누적 滯拂되거나 1回 滯拂期間이 30日 이상 1年 이내 5回이상 滯拂하는 등 常習 滯拂로 인하여 集團勞使紛糾를 야기한 경우에는 勤勞監督官 職務規定에 의해서 拘束을 시키도록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現代의 경우에도 이 規定에 훨씬 더 위배하는 그

런 常習的인 滯拂을 해왔는데 그 동안 滯拂을 하면서 勤勞監督官으로부터 어떤 경고라든지 監督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證人 정훈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전 것은 資料를 調査해 봐야 정확한 答을 할 수 있겠습니다.

○李海瓚委員 勤勞監督 實施를 지난 6月20日부터 6月29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海外部分에 대해서는 8月6日부터 8月23日까지 했거든요. 社長께서 부임하신 후에 했는데 이 勤勞監督官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證人 정훈묵 제가 報告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이렇게 중대한 拘束基準에 해당되는 犯罪를 저질렀을 경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擔當 勞務管理 職員이 社長한테 報告를 안 했나요?

○證人 정훈묵 제가 3月에 부임한 후 3次에 걸쳐 長期 海外出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없는 동안에 그러한 일이 수시로 報告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래도 當 社의 代表理事로서 會社를 운영함에 있어서 勞動關係諸法을 엄격하게 지키는가를 指揮監督할 責任은 있지요.

○證人 정훈묵 예.

○李海瓚委員 이런 중대한 犯罪가 常習的으로 數年에 걸쳐서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 本委員은 실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現代「그룹」하면 國內에서 가장 큰 「그룹」中에 하나인데 바로 現代建設의 勞務는 우리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가늠자를 보여주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企業에서 이렇게 엄청난 勤勞基準法을 비롯한 勞動關係諸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本委員이 質問하고자 하는 것은 現代建設의 生産職·勤勞者들은 하루 평균 몇時間 정도 일을 합니까?

○證人 정훈묵 계절과 現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10時間 정도 勤務를 합니다.

○李海瓚委員 監査過程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사우디」에 있는 現場에서 하루 평균 12時間 정도를 勤務를 했지요

○證人 정훈묵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래서 週當 72時間 정도 勤勞를 시켰는데 원래는 48時間 勞動이 原則이고 本人하고 合意가 되는 경우도 60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는 勤勞基準法의 常識은 알고 계시지요?

○證人 정훈묵 저희가 是正指示를 받고 그것을 봐서 알았습니다.

○李海瓚委員 60時間 이상을 시키면 중대한 犯罪에 속합니다. 이 때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수한 경우만 승인합니다.

60時間을 초과시킨 事業場이 몇군데나 됩니까?

○證人 정훈묵 그것은 제가 資料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勞動部에서는 한 군데만 지적됐습니까?

○證人 정훈묵 몇場所라는 숫자가 없이 勤勞基準法 42條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특히 海外勤勞者인 경우 혹시 本人의 의사에 反해서 勤務時間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정훈묵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會社의 政策上 就業하신 분들과 반드시 合意를 보도록 指示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建築業에 종사하는 勤勞者들은 場所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證人 정훈묵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래서 場所를 옮기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作業에 바로 투여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지요

○證人 정훈묵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런 경우에도 賃金을 支給하나요?

○證人 정훈묵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臨時職으로 契約職으로 인한 사람에게는 支給이 되겠고 現場에서 日傭으로 계약한 분들에게는 待機期間에는 支給을 안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契約에 따른 事項은

정확하게 執行을 하셨나요?

○證人 정훈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本委員이 왜 이 質問을 하느냐 하면 勞動部 監査에서 이 부분에 대한 監査는 없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혹시 그 부분에 契約條件을 위배한 사실은 없나요?

○證人 정훈목 제가 個別的으로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 書類로 報告드릴 기회를 주시면 報告드리겠습니다.

○李海瓚委員 자체에서 法令違背 사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自體監査를 해본 적이 없나요?

○證人 정훈목 現場 所長會議를 통해서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勞動部의 監査도 있었고 是正指示도 있었는데 賃金을 받지 못한 勞動者들에게 監査結果 사실을 告知하고 이것에 대해서 會社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해명한 적도 있나요?

○證人 정훈목 是正 指示를 받은지 며칠 안 돼서 아직 檢討하고 있어서 그 結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案을 發表를 못하겠습니다. 檢討가 되는 대로 發表할 예정입니다.

○李海瓚委員 本人들한테 個別的으로 通知할 예정입니까?

○證人 정훈목 本人은 물론이고 組合하고도 協議할 예정입니다.

○李海瓚委員 그러시면 지난번 現代建設의 납치사건 때 社會的으로 큰 物議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勞動組合 活動은 正常的으로 되고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저희들은 순탄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勞動組合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會社側에 要求한 사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勞動組合에서는 組合을 代表하는 辯護人으로부터 勞賃의 滯拂狀態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行動을 취하겠다는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런 사실에 대해서 會社가 방해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정훈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전체 組合員中에서 몇 名정도가 여기에 參與하고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約1,400名 정도라고 報告를 받았습니다.

○李海瓚委員 앞으로 豫想되는 것까지하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證人 정훈목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答을 못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1,500名이 請求할 未支給 賃金 金額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고 계신가요?

○證人 정훈목 확실히 明細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대략 얼마쯤 되겠다는 感도 안 잡히 십니까? 勞動部에서 是正指示한 것은 20億 정도인데 지금 勤勞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約200億원 정도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접수중이어서 전체가 모아지면 그것보다 훨신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會社에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證人 정훈목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現代建設에서 86年부터 현재까지 産災가 몇件 정도 발생했나요?

○證人 정훈목 제가 産災資料를 준비한 것 87年 88年度 것을 준비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 資料를 複寫해서 全委員한테 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證人 정훈목 알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기왕에 資料를 내주시니까 거기에 安全事故로 死亡한 사람의 숫자도 밝혀 주시고 관악중계사무소 所屬 安全事故者 名單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85年 이후의 退職者 中 解雇者 數 會社의 經營收支를 파악하기 위해서 貸借對照表를 提示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李相洙委員께서 要請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相洙委員 85年 이후에 現代建設에서 退職한 사람의 數 그중에 解雇者 數 法的 紛爭이 야기된 사람의 數 그리고 85年 이후의 經營收支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委員長 金令培 자료가 오면 長官께서는 勞動部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永詰委員 會議의 效率性을 위해서 時間을 아껴서 質問한 것에 대해서는 또 質疑를 하지 말고 그리고 證人을 신청한 목적에 관계되는 것을 하고 참고 자료를 받는 것도 상호간에 협조를 效率的으로 했으면 합니다.

○李海瓚委員 저도 굉장히 많은데 精密監督에 관한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86年부터 현재 精密檢査 받을 때까지 産災事件이 몇 件 정도 됩니까?

○證人 정훈목 87年度에 28名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今年 88年6月末까지는 5名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87年에 259名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産災件數는 「제록스」하는 자료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李海瓚委員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86年 87年 88年 현재에 이르기까지 産災事故가 2,185件 사망자 46名 부상자는 500餘名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被害補償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가장 한 명이 産災로 사망했을 때 얼마 정도를 지급받습니까?

○證人 정훈목 사망 당시의 월정소득액에 다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8,000에서 1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동안에 지난 3年 동안에 50餘名이 사망했는데 다 그렇게 지급되었습니까?

○證人 정훈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資料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海瓚委員 지난 6月 이래로 現代建設勞組와 建設會社間에 團體協約을 위한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證人 정훈목 團體交涉을 13次로 했습니다.

몇 가지가 미합의되어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李海瓚委員 10月22日 臨時代議員大會를 열어 쟁의를 할 조짐이 있지요?

○證人 정훈목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海瓚委員 상습적으로 賃金도 체불해온데다가 集團勞使紛糾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 바로 歸責事由가 使用主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勤勞監督官 職務規定에 의해서 拘束基準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 대상이 됩니다.

근자에 日海財團이나 새세대育英會등 5共非理의 헌금 목록을 보면 정주영會長이나 現代關係 사람들의 기부금 명단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勞動者들한테 지불해야 할 중요한 賃金은 당연히 法律的으로 지불해야 되고 지불하지 않으면 拘束이 되는 賃金은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5共非理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는 꼬박꼬박 수십億씩을 내는 財團을 보면서 勞動者들이 일할 맛이 나겠고 그 企業이 社會的 企業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産災率도 대단히 높고 勤勞基準法도 안지키고 있고 그외에 적용되는 法條文도 굉장히 많습니다.

現代建設에 관계된 것만 해도 精密監査에서 지적된 것이 많은데 이것도 다 지적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時間외 勤勞手當이라든지 다른 조건도 精密監督을 하면 나올 것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企業의 倫理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서글프기도 하고 社會的 企業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李仁濟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現代建設에서는 勞動部의 精密檢査結果를 10月11日 통보받았고 그 내용대로 20日 이내에 시정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金額이 21億 정도 되는데 지시를 잘 따라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21億은 86年度 한해분이고 84年度 85年度 자체에서 檢査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전에 賃金 떼먹은 부분은 시효가 지났으니까 안해줄 생각이에요? 賃金時效가 3年이니까 83年 82年 이것은 해줄 생각이 없습니까?

○證人 정훈목 그것은 오기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하겠습니

다.

○李仁濟委員 그것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現代建設이 現代「그룹」의 人員數로 볼 때 몇분의 몇입니까?

○證人 정훈목 15萬名이 되는데 저희가 4萬 2,000정도…

○李仁濟委員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0億의 賃金누락이 있었는데 5共和國 8年동안 現代建設이 누락시킨 것은 150億 내지 160億이 안되겠습니까? 「그룹」이 누락시킨 것은 네배를 곱하면 약 600億 정도가 되는데 도하 新聞에 보면 새세대育英會다 무슨 財團이다 하는데 돈 갖다바친 것을 보면 現代「그룹」이 제일 많이 갖다바쳤던데 그 동안 헌금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證人 정훈목 저는 現代建設의 專門經營人이기 때문에 他會社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數百億을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會社를 해서 돈을 벌어도 몇百億씩을 갖다 바칠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企業을 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정훈목 現代建設에서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워낙 會社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헌금같은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참여를 안했다고 봅니다.

○李仁濟委員 會社 사정이 어려운데 몇십億 몇百億 씩을 갖다주어요?

서정의씨 납치 당시에 證人은 어디에 계셨지요?

○證人 정훈목 本社에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납치 직전에 서정의씨가 이명박會長을 만날 때 같이 있었습니까?

○證人 정훈목 만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李仁濟委員 더 묻지 않고… 現代「그룹」은 上層部에서 各企業社長들한테 또 名企業會長은 擔當理事들한테 擔當理事는 擔當部長한테 만일 자기 部署에서 勞組가 설립되면 인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독려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정훈목 그런 지시를 上部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下部에도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證人 정훈목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어떻게 밑의 理事나 部長들이 몇千萬원씩을 들여서 勞組를 설립하려고 하는 서정의를 납치할 수 있습니까?

上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목을 걸어놓고 하는 것인데… 勞組를 지금까지 現代建設이 어떤 연유로든지 적대시해온 것만을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前近代的인 사고에 젖어있는 한두 사람의 最高經營者의 생각일 뿐이지 證人과 같은 專門經營人의 생각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證人 정훈목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專門經營人이 하루빨리 現代「그룹」 經營의 주도권을 잡고 勞組를 적대시하지 말고 함께 共榮하는 가운데 企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정훈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海外建設 나갔던 勤勞者들의 死亡數가 昨年하고 今年에 몇 名입니까?

○證人 정훈목 87年度에 28名 88年度는 6月末까지 5名입니다.

○李仁濟委員 적지 않은 數字네요. 그것은 그만큼 會社에서 安全對策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證人 정훈목 사건이 발생하는 件에 따라서 어느정도 누구에게 歸責事由가 있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會社의 책임자로서도 이러한 人命被害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슬프게 생각하고 그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훨씬 더 관리면이나 인원 배치면에서 노력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개선을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을 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요즈음은 대개 1年6月 契約하고 근로자들을 송출하지요?

○證人 정훈목 요즈음은 1年으로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契約期間 만료 전에 의사에 반해서 귀국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금년에만 그렇게 의사에 반해서 계약 기간 이전에 귀국시킨 수자는 몇 名이나 됩니까?

○證人 정훈목 그 숫자를 파악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委員님께 추후에 書類로 報告 드리겠습니다.

○李仁濟委員 됐습니다. 報告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特定人을 거론해서 質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저는 본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勞動部에도 진정을 하고 現代建設에도 진정을 한 사건인 모양인데 「리비아」에 작년 6月에 나갔던 이주홍씨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社長께서는 들어 보셨어요?

○證人 정훈목 委員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李仁濟委員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가서 자기가 6개월여 근무하는 동안에 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安全施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하고 충돌이 돼서 회사에서 강제 귀국을 시켰는데 귀국사유가 工程完了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회사에서 지금 황급하게 징계 해고한 것으로 서류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회사측 이야기를 안들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海外에 나가 있는 근로자도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해고 당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보장된 계약기간 동안 勤勞를 하지 못하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귀국시키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證人 정훈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이상으로 本委員은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 동안 最高 經營者로써 하실 일이 많을텐데 現代建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現代建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데 本委員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이 높으면 그림자도 길다는 말이 있듯이 회사가 크다가 보니까 경영상 어두운 면도 있을 것이고 특히 어두운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勞務管理가 아니었는가 이것은 本委員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사의 발전이라든지 안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現代建設이 勞使關係의 발전에도 모범적으로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本委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令培委員長, 張永喆幹事와 司會交代)

○金炳龍委員 지금 李仁濟委員이 徐委員長의 납치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해서 法의 裁判을 받았는데 그 裁判의 判定文 사본을 한 장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同僚委員들이 諸手當 지급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가 석연치 않고 이유가 있다라는 證人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證人 정훈목 저희 회사가 年月次 수당 지급에 관해서 建設會社의 특수성 때문에 몇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金炳龍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勤勞基準法에 준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法이 그것까지 가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精密檢査를 할 때 당 회사의 勞務 담당이나 또는 管理 담당 책임자하고 틀림없이 사유를 물어 가지고 이러한 통고가 나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勞動部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회사측의 어떤 이유를 들어 보지않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證人 정훈목 맞습니다. 저희들도 精密檢査官들한테 이러한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退職金 休日手當같은 것은 제 때에 지급을 안하면 法의 저촉을 받으며 또 징역 내지는 1,000萬원 벌금을 문다는 것은 알고 계셨는지요?

○證人 정훈목 구체적인 罰則條項은 저 자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金炳龍委員 勤勞基準法 44條에 보면 2年 징역 또는 1,000萬원 벌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現代建設이 7,700名라고 證人이 말씀했는데 手當 未支給 현황에 의하면 1,800名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7,700名을 더 合算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證人 정훈목 7,727名은 海外 근무자중에 1,626名이 任員 혹은 事務職 내지 技術職 직원이고 6,100名은 契約職 근로자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1年이 통상 계약기간인 근로자들입니다. 지금 勞動部에서 精密檢事를 해주신 대상은 주로 大卒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직 내지 기술직의 일반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적된 수자가 1,600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金炳龍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李仁濟委員이 질문한 것과 같이 證人은 法에 따라서 앞으로 3年을 소급해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요?

○證人 정훈목 그것은 저희들이 勞動部의 지시 사항대로 거기에 준해서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기일 내에 勞動部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金炳龍委員 저희는 지금 勞動部에서도 일부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證人은 앞으로 확실하게 全社員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同僚委員들도 너무나 差額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逆算해서 전부 계산하면 약 150億 내지 200億이 될텐데 그렇다고 보면 現代그룹이 日海財團이나 育英會에 낸 돈이 紙上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110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갖다 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갖다 내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만큼 政府로부터는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이끌어 가고 또 피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諸手當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빼 놓지 말고 이 기회에 證人께서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것으로 해서 어떤 위축감을 갖는다든지 또는 企業의 의욕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永喆 다음 李康熙委員께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우선 現代建設에서 勞動部가 精密監査를 했고 또 그동안에 많은 委員님들이 이 額數에 대해서 대충 21億으로 質問을 드렸고 또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證人 정훈목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받은 額數가 87年度에 해당되는 것이 약 21億 정도 된다고…

○李康熙委員 그러면 88年度에는 이것이 다 시정이 되어서 지급되었습니까?

○證人 정훈목 88年度에는 年月次를 비롯해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되는 制度를 시정했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勞動部 精密監査의 결과가 金品不足支給에 연장근로수당 4件에 4億339萬8,547원 그것 지적 받으셨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받았습니다.

○李康熙委員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사무직 일부 336名 429萬2,735원 그것도 맞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맞습니다.

○李康熙委員 그 다음에 통상임금계산착오 1,169名에 1億4,932萬2,812원 맞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맞습니다.

○李康熙委員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계산착오 841名 679萬8,875원…

○證人 정훈목 맞습니다.

○李康熙委員 단속 감시적 근로 172名 2,394萬8,767원…

○證人 정훈목 지시받은 전문은 本社 雇傭職 이종철外 171名에게 夜間勤勞手當 計 2,394萬8,767원을 부족 支給함 가장 유사한 項目이 額數가 그것입니다.

○李康熙委員 團束監視的 勤勞라는 것이 무슨 團束을 위한 要員인지 확인 겸 質問하는 것입니다.

○證人 정훈목 그 일의 종류가 가령 밤에 守衛를 한다든가 「보일러」室을 감시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康熙委員 人員과 額數는 맞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李康熙委員 휴일근로수당에 휴일지정국경일 4대절 2,205名 6,125萬9,856원…

○證人 정훈목 1,950名과 고용직 70名에게 휴일 근로수당 計 6,125萬9,856원을 未支給함. 맞습니다.

○李康熙委員 통상임금계산착오 1,186名 6,273萬2,275원…

○證人 정훈목 委員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指示事項에 받은 원문에는 冠岳중기사업소하고 釜山 남항 방파제축조공사장하고 둘로 분리해서 金額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 두 공사장을 합하면 委員님께서 불러주신 그 數字하고 같다고 믿어집니다.

○李康熙委員 휴일 4日 不足人員 海外現場에서 2,284名 5,891萬7,000원 그 다음에 退職者 金品 月給與 일할계산 726名 3,612萬6,227원 그 다음에 休暇不足實施에 연차 휴가 未實施 86年1月부터 86年12月 3,239名 3萬7,241日 手當환산이 7億5,255萬27원 월차휴가 일부미실시 期間은 같고 4,640名 5萬931日 수당환산 9億7,415萬2,838원…

○證人 정훈목 맞습니다.

○李康熙委員 전체 項目과 金額이 맞지요?

○證人 정훈목 지금 불러주신 것은 是正指示받은 것과 順序는 다르지만 金額이나 내용은 맞습니다.

○李康熙委員 이것을 勤勞者에게 支拂하는 것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습니까?

○證人 정훈목 이 指示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資料와 對照해서 檢討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委員님의 質疑에 責任있는 答辯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중 일부는 확정된 것이 있지만…

○李康熙委員 精密檢查를 한 資料가 發表되어 나왔는데 다시 의견차가 있어서 論難될까봐 확정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證人 정훈목 月次有給休暇 86年1月부터 12月까지는 金額으로 表示되어 있지만 86年 이전에 관해서는 「위의 가項에 準하여」 이렇게 指示되어 있고 金額으로 表示가 안되어 있습니다.

指示대로 할 수 있도록 確定된 것은 86年1月부터 12月까지의 月次 有給休暇 그 다음에 年次 有給休暇 그 다음 海外部分에 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이 모두 일곱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것이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日 이내에 是正指示 하셨기 때문에 그 期限안에 勞動部 指示대로 따르겠습니다.

是正指示의 내용을 勞動部의 報告하겠습니다.

○李康熙委員 金額과 指示內容 받은 것은 異議가 없으신데 그대로 支拂하겠다는 것입니까?

○證人 정훈목 그것은 項目別로 檢討中이기 때문에 異議가 있고 없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確定되어서 支給할 수 있는 會社의 方針이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會社의 方針은 勞動部의 指示事項을 따르는 것입니다. 指示받은 것은 公文은 10月日字로 되어 있고 10月11日에 接受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是正期限이 20日 이내인데 是正期限內에 是正 또는 改善이 불가능한 事項에 대해서는 그 事由와 是正指示 事案別 자체 改善執行計劃을 事前報告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精密檢查를 해서 指示했는데 나중에 다시 額數나 項目을 놓고 勞使問題가 再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國政監查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다면 논란이 豫防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賃金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最善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證人 정훈목 그 문제는 여기서 單獨으로 答辯할 權限이 없는 事項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理事會에 報告해서 決定해야할 事項이 되겠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그것도 決定하셔서 勞動部에 해 주셔서 그 勞動部의 報告事項이 勞動委員會로 指示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확정된 金額이 나왔다는 것을 前提로 質問합니다.

勤勞者의 일한 代價를 어찌되었든 未支給

해 가지고 勤勞者의 生活 형편을 어렵게 만든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證人 정훈목 예.

○李康熙委員 그러면 最小限 法定 利子를 加算해서 支給할 용의는 없습니까?

○證人 정훈목 그것은 제 權限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次後에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康熙委員 海外에서 建設業을 하고 계시는데 外國人은 얼마나 거기에 就業을 시키고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대략 我國人 任職員 勤勞者하고 第3國人하고 정확한 數字는 아니지만 半半정도 된다고 봅니다.

○李康熙委員 우리나라에 勞動問題가 상당히 強化되고 勤勞者의 욕구가 충족을 要求하는 時代를 맞아 外國에 나가서 外國人의 싼 賃金을 選好하는 경향으로 國內의 勤勞者의 失業을 높일 수 있는 소지를 하나하나 더해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觀點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國家觀을 가지셔가지고 最大限 國內人의 失業率을 막을 수 있는 制度에 積極 參與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解消시키는 一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證人 정훈목 銘心하겠습니다.

○李康熙委員 勞使協議會를 進行할 때 主로 會社側에서는 누가 參席하고 계십니까?

○證人 정훈목 13次의 協議會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國內에 있을 때는 주로 參席을 하고 제가 海外出張中이거나 다른 活動으로 參席을 못할 때에는 제 바로 밑에 總務本部長 副社長이 주재를 합니다.

그 副社長이 같은 事由로 有故가 있을 때에는 技術部를 擔當하고 있는 다른 副社長이 參席을 합니다.

○李康熙委員 그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勞使問題에 決定權者가 參席을 안해 가지고 勞使問題에 대두되는 觀點의 集點을 흐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狀況把握으로 質問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張永詰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韓光玉委員 質疑하십시오.

○韓光玉委員 證人께서는 專門經營人이라고 하셨지요?

○證人 정훈목 그렇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면 專門經營人으로서 소위 勞使觀은 어떠신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정훈목 저의 개인 所見 뿐 아니고 同僚 專門經營人들이 근자에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共通點이 요즘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勞動組合의 運動이 勤勞者의 團體活動이 會社의 經營에 특히 生產性 提高問題에 있어서 하나의 負擔이 간다고 생각을 한 적이 과거에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제 個人 생각으로는 企業을 하는데 있어서 市場開拓 活動을 하고 財務管理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必須不可缺한 것과 마찬가지로 勞動組合이 組織되어서 組合員들이 거기에서 積極的으로 法律의 테두리안에서 組合活動을 할 때에는 會社에 寄與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이러한 經營「매니지맨트」가 上命下達의 方法으로 하는 것보다는 組合의 幹部들과 1次的으로 協議하고 그 結果를 全 社員에게 說明할 때 훨씬 더 說得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組合의 幹部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은 會社의 經營陣에서 說明을 해서 부탁하기 이 전에 자기들 자신이 改善에 관한 여러가지 提案을 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만한 勞使關係 하나의 時代潮流의 단순한 必要性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肯定的이고 積極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可能性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韓光玉委員 勞使觀에 대한 건전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재가 지적을 하겠지만 現代가 再定立해야 되겠고 과거와 같은 勞使關係는 탈피하고 거듭 태어나는 轉換點에 들어서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專門經營人으로써 어떻습니까? 勤勞者들이 일을 하면 댓가를 받아야 되고 企業主側에서는 줘야죠?

○證人 정훈목 예.

○韓光玉委員 따라서 勤勞者들은 勞賃뿐만 아니라 幸福을 향유할 수 있는 權限도 있지요?

○證人 정훈목 예.

○韓光玉委員 지금 現代가 안고 있는 銀行負債는 얼마나 됩니까?

○證人 정훈목 제가 알고 있는 現代建設의 負債는 國內에서 約 3,450億으로 며칠 前에 報告를 받았습니다.

○韓光玉委員 現代「그룹」전체를 합하면 여기에 3倍 내지 4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銀行 돈을 쓰는 企業인데 銀行 돈은 결국 國民의 돈 아닙니까? 國民의 돈 가지고 키웠고 현재도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社會에 대한 責任이 있지요.

○證人 정훈목 예.

○韓光玉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代에서 賃金을 滯佛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專門經營人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정훈목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韓光玉委員 더우기 現代「그룹」에서는 5共非理에 속한 日海財團이라든지 새마을團體에 가장 많은 誠金을 냈습니다. 國民의 돈을 가지고 賃金도 못 주고 있는 형편에 이와 같이 막대한 額數로는 110億이라고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돈은 權力에 헌납하고 그 權力으로부터 反對給付를 받아가지고 또다시 다른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企業의 利潤을 추가하려고 한 이 企業의 經營觀은 잘못돼 있는 것인지 잘된 것인지 다시한번 評價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정훈목 저의 責任 分野에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반드시 是正을 하여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韓光玉委員 이와같은 것은 企業의 倫理性을 저버리고 약한 勤勞者의 賃金은 주지 않고 權力에 아부하는 거기에 따라서 反對給付를 노리고 있는 企業觀 이것은 하루빨리 청산을 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社長께서는 今年 3月1日에 취임하셨다고 했는데 現代建設의 前勞動委員長 서정의씨 납치사건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시지요?

○證人 정훈목 저는 事後에 報告된 資料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여러가지 물을 게 많습니다마는 結論的으로 거기에 현재 幹部들이 두名이나 拘束이 되고 司法處理된 마당에서 다시 그 문제를 두추고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위 그 事件은 勞組活動을 방해하기 위한 現代의 高位層이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납치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證人 정훈목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委員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幹部들이 檢察과 法院의 裁判을 받은 結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정社長께서는 서정의씨를 만나서 釜山에 가신 적이 있지요?

○證人 정훈목 네. 갔습니다.

○韓光玉委員 그것은 李明博 會長하고 상의하고 내려갔지요?

○證人 정훈목 그렇습니다.

○韓光玉委員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目的으로 갔습니까?

○證人 정훈목 두가지 目的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서정의씨가 피납중에 父親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會社의 代表로서 그 家族들에게 직접 가서 사과드리고 사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정의씨가 마침 休暇가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가서 父親하고 또 다른 가족들을 찾아뵙고 會社 代表로써 사과해야만 저한테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갔었습니다.

○韓光玉委員 어쨌든간에 社長 입장에서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심정을 本委員도 이해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答辯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事件은 當 社에서 소위 勞組의 活動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자행된 상당한 計劃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不當 勞動行爲라고 보는데 社長은 여기에 同意하십니까?

○證人 정훈목 결과적으로 不當 勞動行爲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韓光玉委員 社長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하시고 다시는 그와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勞組를 育成해서 勤勞者와 企業이 같이 成長하는

차원에서 經營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정훈목 명심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오늘도 代議員大會가 열리는 것 같은데 未合意된 사항이 11가지가 있다는데 未合意된 것은 빨리 對話를 통해서 원만하게 合意點을 찾아가지고 勞使間의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本委員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擧論한 것인데 이것은 人間的인 면에서 現代側에서 섭섭하다는 생각도 들고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또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라크」에 勤勞者가 갔었다가 「쿠루트」族에게 납치돼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온 최승우라고 있었습니다.

○證人 정훈목 저는 그 분은 個人的으로는 모르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부임한 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韓光玉委員 이 문제는 죽은 한 사람과 또 한사람은 脫出을 했지만 脫出過程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現代側의 無誠意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例를 들면 몸값을 그쪽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7億 정도를 要求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現代側의 關係 所長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結果的으로 사람 두 사람을 구하는데 現代側에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協商場所에 나타나지 않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몸값때문에 못 풀려나고 他國의 13名은 몸값을 주고 풀려나왔다고 하는데 現代側에서 이런 문제를 處理하는 方法에 매우 非 人道的이었다고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 살아온 사람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일을 못할 정도로 負傷을 당했는데 8個月 동안의 賃金은 제대로 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일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補償이라고 해서 補藥값으로 돈 200萬원주고 말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會社側의 處事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調査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善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專門經營人이시고 건전한 勞使觀을 가진 정社長께 격려를 드리면서 現代가 勞使問題에 대해서는 거듭 태어나는 企業이 되기를 바라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證人 정훈목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에는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아까 李康熙委員이 소멸된 賃金을 支拂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社長의 權限事項이 아니라고 答辯하셨는데요. 대체로 權限事項을 주로 어떤 것입니까?

○證人 정훈목 저희 會社에도 代表理事가 2名입니다. 그리고 專決規定은 명확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중대한 문제는 會長님하고 理事會를 통해서 決定하는 것이 저희 會社의 通常的인 方法입니다.

○盧武鉉委員 會長은 理事會를 주재하는 분입니까?

○證人 정훈목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럼 지난번 서정의씨 납치사건같은 것은 지금 證人으로 나온 社長은 몰랐다는 얘기지요.

○證人 정훈목 저는 몰랐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代表理事가 있으면 다른 常務나 專務 總務擔當 本部長 常務 이렇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 직함을 가진 참모들은 각기 분야에 따라서 결재를 따로 받습니까?

○證人 정훈목 그것이 깨끗하게 制度化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個人의 경우 1年에 3分의 1은 海外受注를 위해서 國外에서 勤務를 하기 때문에 제 결재를 거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에 대해서는 本部長들이 판단을 해서 會長님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 通常的 例입니다.

○盧武鉉委員 證人의 專功은 무엇입니까?

○證人 정훈목 저는 學校에서 經濟學을 工夫했습니다.

○盧武鉉委員 會社에서 맡고 있는 業務는?

○證人 정훈목 海外受注하고 國際金融關係를 제가 주로합니다.

○盧武鉉委員 人事管理總務는 잘 아십니까?

○證人 정훈목 저는 잘 모릅니다.

○盧武鉉委員 그 분야 業務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결제를 합니까?

○證人 정훈목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은 代表理事가 주도해 왔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盧武鉉委員 지난번 서정의씨 납치사건으로 처벌받았던 분은 무슨 담당理事였습니까? 金錢은 취급하지 않겠네요?

○證人 정훈목 國內工事管理部長입니다. 國內工事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資金은…

○盧武鉉委員 이런 직에 있는 사람이 명목이 불투명한 금전을 임의로 數千萬원씩 지출할 수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잘 모르겠습니다.

○盧武鉉委員 金錢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질 必要性이 있는 部署는 어디입니까?

○證人 정훈목 建設現場을 맡고 있는 所長의 경우와 住宅事業部에서 事業을 하시는 분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더이상 추궁해 보고 싶은데 더 안들어 가겠고 現代 상징광고가 있지요? 國家와 社會에 대한 公的인 책임을 가진 國家 社會 발전을 선도하는 企業이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더 안 묻겠습니다.

○李相洙委員 是正指示書 47條 48條 違反部分에 대해서는 全金額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46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證人 정훈목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올 때까지 전체를 검토해서 재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하면 拘束시켜야 될 事案입니다. 10月11日 指示書가 내려갔는데 더구나 國會에서 證人으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 못지었어요? 도대체 뭐 준비하고 나왔어요! 46條 부분은 단순히 法律的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까?

○證人 정훈목 勞動部에서 是正指示를 받았을 때는 20日 이내라는 기한을 받았습니다. 출두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관계되는 文件 書類가 많은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法律의 근거에 대해서 異議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延長勤勞手當에 대한 1,504名 이라든지 발생하는 額數가 명시해 주신 額數인지 이러한 것은 實務的으로 한번 검토해서 20日안에 勞動部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法律的인 측면에 대해서는 勞動部의 견해에 대해 따르겠다. 그렇지만 具體的인 金額에 있어서는 計算上 문제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證人 정훈목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證人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음에 입증하려 했던 것 이상을 묻고 싶은데 현대「그룹」이 他企業에 대해서 勞使紛糾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證人 정훈목 一次的인 책임은 管理責任者들이 最高經營者들이 勞務管理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시인을 하니까 더 묻지 않겠는데 現代는 실례되는 얘기같지만 그동안 國家로부터 가장 많은 특혜와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급성장한 企業입니다.

따라서 어느 企業보다도 國民에 대한 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룹」內 勞使紛糾로 구속된 勤勞者가 몇名입니까?

○證人 정훈목 現代建設에서는 없었습니다. 전체 「그룹」의 통계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第3者介入違反으로 들어가있는 권용묵씨의 拘束事由는…

○證人 정훈목 잘 모르겠습니다.

○李相洙委員 證人께서는 같은 「그룹」內의 社長님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證人 정훈목 제가 알고 있는 것은 昨年인가 무슨 사고가 나서 勞組委員長을 다시 선거도 하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外國에 있을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더 묻지 않겠고 現代建設의 昨年 再昨年 사퇴한 사람의 수자를 보자고 했는데…

○證人 정훈목 대충 86年에 1,700名 정도 87年에 500名 정도 今年은 300名 정도인 것 같은데 정확한 수자는 돌아가서 보내드리겠

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현재 사퇴를 한 사람들이 법정에 解雇無效訴訟을 제기하는 경우가 몇 件이나 되지요?

○證人 정훈목 그것은 實務者한테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現代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會社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에게 會社가 너무 쉽게 整理解雇를 하고 있다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정훈목 委員님 이 수자에 제시되었듯이 86年度에는 저희 회사가 海外事業이 급격히 축소했기 때문에 많은 減員을 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86年度를 보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회사를 떠나야 했던 任職員들이 어느 해보다도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자신이 現代建設로 온 이후에는 그렇게 대대적적인 체계적인 해고는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1年에 자연적으로 辭表를 내고 다른 業體로 전근을 가는 분들 혹은 進學을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4·500名 정도가 평균이라고 느껴집니다.

○李相洙委員 本委員이 알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퇴를 강요했고 심지어는 책상을 주지 않고 사퇴를 강요하기 때문에 옆 동료한테 부끄러워서 할 수 없이 退職金을 받고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企業 經營하시면서 이런 점도 유념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證人 정훈목 알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작년에 現代建設의 임금인상의 폭이 얼마였습니까?

○證人 정훈목 대중 15% 임금 인상이 평균적으로 있었습니다.

○李相洙委員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證人 정훈목 86年度에는 약 4% 정도였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社長께서 86年度에는 4%였는데 작년에 15%로 增加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제일 중요한 이유는 競爭社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발을 맞춰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86年의 賃金引上이 회사의 형편이 너무 줄어들어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룹」 내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균형면에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많이 올라갔고 또 금년에도 경쟁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李相洙委員 本委員들이 아까 이 質問을 하기 위해서 3年間의 경영수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86年과 87年의 회사의 흑자폭이 어떻습니까?

○證人 정훈목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자세한 수자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경쟁사가 생겨났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경쟁사가 없으면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되고 언제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경쟁사가 없으니까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경쟁사가 생기니까 인제 임금을 인상한다는 취지 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어렵다고 엄살부리면서 임금을 인상 안해왔는데 사실상 돈은 있으면서 임금을 인상 안해 준 것 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證人 정훈목 저희들하고 경쟁하는 것은 대개 국내의 5大 建設會社입니다. 그런데 이 5大 건설회사는 모두 다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경쟁은 옛날부터 쭈욱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이 100% 다 경쟁사가 올렸기 때문에 갈 수는 없습니다. 生計費指數라든지 직원들의 勤務年限이 올라가면 호봉제 승진도 있어야 되고 또 연령의 상승에 따라서 필요한 생계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李相洙委員 社長께서 제가 임금 인상의 이유를 물으니까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이 경쟁사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꾸어 얘기하면 경쟁사가 없으면 임금을 올려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고 또 경쟁사가 생기면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회사의 여력은 있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分析을

하기 위해서 물어 본 것이니까 더 이상 質問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지요.

「파푸아 뉴기아」에 갔던 勤勞者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證人 정훈목 예. 그것을 완전히 일단락을 보았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떻게 해결되었지요?

○證人 정훈목 우선 근로자의 요구 사항에 관한 解決措置하고 또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내지 本社의 조치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22名에 대한 片道 항공요금과 65名에 대한 왕복 항공요금도함 9,874萬5,000원을 계약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作業 거부 기간중 임금 지급이 6月23日부터 7月4日 즉 그분들이 개인별로 귀국할 때까지 93名 전원에 대해 총액 2,881萬餘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몇 분들이 귀국후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제출했기 때문에 농성기간 중 위로금 지급으로 1,395萬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3名 전원에게 원하신다면 再就業을 보장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93名중 19名을 再派出이 되어서 해외에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52名은 현재 出國수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名은 해외 취업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10名은 회사에 와서 아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아직도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患者는 安全職의 박인호씨가 지금 치료기간 중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완료된 후에 검토해서 장해 정도에 따라 障害補償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이지요?

○證人 정훈목 예.

○盧武鉉委員 「파푸아 뉴기니아」 歸國 노동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부 농성하고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證人 정훈목 처음 귀국한 날부터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45日이 걸렸습니다.

○盧武鉉委員 몇 名중에 몇 名이 돌아 왔습니까?

192名중에 약 140名이 일단 문제를 일으켰다가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귀국한 사람은 110여명이지요?

○證人 정훈목 93名이 귀국했습니다.

○盧武鉉委員 現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작업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더 많지요?

○證人 정훈목 네. 많습니다.

○盧武鉉委員 「사우디 아라비아」보다 勤勞條件이 좋다고 하여 월급도 「사우디 아라비아」보다 적게 책정해 가지고 사람 데리고 가서 伐木刀를 옆에 차고 다니면서 報復의 풍습이 있고 사람을 현장에서 죽이고 하는 것이 눈 앞에 벌어 지고 있는 곳에서 작업을 시켜 놓고 벌써 이 勞動者들이 있는 동안에 87年12月부터 7月3日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7月3日에 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번에 걸쳐서 殺傷行爲가 반복되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 두려워서 여기서는 작업 못하겠다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이 비행기 삯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안고 돌아온 것이 그 돌아온 歸責 사유가 노동자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정훈목 ……

○盧武鉉委員 물어 봤자 答辯이 잘 안 나오니까 社長이 모르는가 싶어 다시 한번 내가 지적할께요.

현장의 安全管理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노동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죽으면 돈 물려 주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7月3日에 환자가 칼에 찔려 負傷 당했을 때 현장의 책임자 常務라는 사람은 報告를 받고서도 「테니스」인가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누구를 믿고 거기서 작업을 합니까? 귀국했는데 그 歸責 사유를 가지고 勞動部에서 주라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골병 들었는데 해결할 때까지 돈 4,000萬원 들었습니까? 노동자 93名이 돈 벌어 보겠다고 客地에 처자식 떼어놓고 그 더운 「장글」속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일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돌아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남의 政黨에 들어가서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法대로 하라면서 몇 10日동안 너희 돈 없는

사람들 라면 끓여먹을 돈 떨어지면 끝난다 이러면서 버렸지 않습니까? 또 농성하려 갔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팼지 않아요 그 경과를 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정훈목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래 놓고 재취업을 하려면 보통 재취업을 결심하고부터 勞動事務所에 해외 취업의 등록을 하고부터 실재로 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약 3개월의 기간에 걸립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그 보상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勞動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몇 번이나 경과를 조사하고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서 답변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現代에다 분명하게 지적해 달라고 勞動部 本部까지 찾아가서 國會議員이 애걸복걸해도 아무 결과가 안 나왔어요

現代가 도대체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누구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 안되는 게 무엇입니까? 大韓民國 땅 덩어리 눈에 보이는 대로 몽땅 매립해서 울타리만 치면 現代 것 아닙니까? 勞動者 누구든지 막 두드려 잡아도 누구하나 문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입니까? 國家發展에 기여하는 기업입니까? 그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만났는데 결국 하루하루 먹을 것 없으니까 농성을 못하고 눈물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굴복한 것입니다.

○證人 정훈목 ……

○李相洙委員 盧武鉉委員 말씀은 깊이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證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입증하려고 했던 부분 이상의 質問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까 社長의 勞使觀을 말씀하셨는데 그 勞使觀을 지켜 나가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證人 정훈목 명심하겠습니다.

○金炳龍委員 長官님께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資料에 보면 委員들이 質疑한 내용하고 너무나도 상치되고 일부분만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現代建設 정밀 조사한 勤勞監督官은 일부 형식적인 조사만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社長이 답변하는 가운데서 근거를 보면 3年을 소급했을 적에 150億 이상의 金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것을 20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長官께서는 그 담당 근로감독관을 책임 추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憙 아까 李仁濟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놓은 것을 現代建設의 경우는 87年度 1年分입니다. 봉급 소멸시효는 3年이기 때문에 아까 나머지 前年度 또 그 前年度 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처리하라는 注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年이면 됩니다.

○李海瓚委員 長官께서 그렇게 答辯하신다면 精密監督結果 報告書를 보니까 槪略的으로 되어 있어서 具體的인 것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本部監査에서 이것의 원철 즉 기초자료를 提出要求했는데 아직 提出이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1次 特別監督 2次 特別監督 이것은 아주 간략한 結果報告書이고 이 結果報告書를 作成하기 전에 勞動監督官들의 1次 復命書가 있습니다. 그것을 提出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憙 資料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각 보내드리겠습니다.

○李海瓚委員 現代建設이 勤勞基準法 違反事項으로해서 87年度 金品未支給分이 約 20億이 더 나오는데 현재 現代勞組에서 勞組員을 對象으로해서 金品未清算에 관한 民事訴訟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訴訟을 준비하고 있는 資料에 의하면 約 3年에 걸쳐서 200億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이 精密檢査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本委員의 判斷입니다.

具體的으로 例示하면 延長勤勞手當 夜間勤勞手當 休日勤勞手當 혹은 年月次 實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建設産業에 있어서의 特性이 여러 事業場間의 移動이라든가 建築工期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時間外 手當部分이 상당히

있으리라는 것이 本委員의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綜合的으로 볼때 勤勞監督이 精密監査라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勞動部에서 이 勤勞監督 자체가 실체에 얼마나 接近했는가를 再檢討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金炳龍委員 證人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提示한 내용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履行하지 않을 때는 國政調査權을 發動해서라도 再調査를 할 수 있는 機會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機會에 성실하게 諸般手當이 잘못된 것을 處理하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것으로 정훈목 現代建設社長 證人에 대한 證言聽取를 마치겠습니다.

退場하셔도 좋습니다.

한 분의 證言聽取가 約 2時間40分 가량 걸렸습니다.

휴식도 취할 겸 해서 잠깐 停會를 宣布합니다.

(23時50分 監査中止)

(零時 5分 繼續監査)

○委員長 金令培 監査續開를 宣布합니다.

방금 전에 4黨 幹事會議를 했습니다.

그 結果 子正이 넘고 이제 本部監査를 또 계속한다 하더라도 한 두時間에 끝날 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는 24日 午後 2時에 本 監査를 延長 續開하기로 合意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合意된데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 異議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散會를 宣布합니다.

(零時7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金令培	金東仁	孫柱煥
梁慶子	李康熙	李潤子
李台燮	張永喆	李相洙
李海瓚	韓光玉	金在光
盧武鉉	李仁濟	金炳龍
金鎔采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卓英鎭
立法審議官	宋芳燮

○被監査機關參席者

勞動部

長官	崔明憲
次官	李龍俊
企劃管理室長	鄭東佑
勞政局長	具然春
勤勞基準局長	金基德
職業安定局長	金濟憲
職業訓練局長	禹誠
勞動保險局長	康斤熙

○出席證人

證人	정훈목
證人	주영만
證人	權度容
證人	卞鎬奎